



생활정치와 자치분권의 시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방안 세미나**

2017.3.22.(수) 14:00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목 차

I. 개요

- 1. 축사 5
- 2. 행사소개 및 세부일정 13

II. 마을영화 소개 20

III. 발표자료

- 1. 마을공동체미디어, 풀뿌리 정치의 학교와 광장 (이희랑) 23
- 2. 미디어자치와 자치분권 (정수진) 39
- 3.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의 전면적 재편 방안 (최성은) 47

IV. 참고자료

- 1.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안 58
- 2. 전라북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조례 68
- 3. 제주 마을공동체미디어지원조례 71
- 4. 서울 성북구 창조문화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73
- 5. 마을공동체미디어기본법안 76
- 6. 충남영상문화발전네트워크 사례 87
- 7. 전국 마을미디어 활동현황 91
- 8. 세미나 공동주최 단체 현황 104



축사

국회의원
노웅래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마포갑 국회의원 노웅래입니다.

먼저 오늘 ‘생활정치와 자치분권의 시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방안 세미나’에 참석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와중에도 발표와 토론을 맡아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 근원에는 ‘소통 부재’가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의 소통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공동체라디오방송은 기존방송의 영역이 아닌 제3의 미디어로 자리 잡아 풀뿌리 민주주의와 시민 목소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방송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라디오방송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공동체라디오라는 용어가 「방송법」에 추가된 것 외에는 변화된 것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공동체라디오방송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체라디오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 누구나 자기 생각을 직접 말할 수 있는 창구들이 활성화될 수 있으며, 국민 목소리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공동체라디오방송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세미나를 통해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좋은 의견들이 도출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3. 22.
국회의원 노웅래



축사

국회의원
유은혜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유은혜입니다.

오늘 ‘생활정치와 자치분권의 시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활성화방안 세미나’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촛불정국은 우리 사회에 큰 화두를 던졌습니다. 기존의 질서와 관행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고, 수동적 관객으로 머물던 국민들이 능동적 주체로서 우리 사회에 전면에서 나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국민의 경험과 지혜를 얻고, 생활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정책과 제도로 풀어나가는 생활정치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고, 중앙 집중적이고 수직적 권위로 행해졌던 낡은 질서를 자치와 분권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절실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그 정점에 ‘미디어’가 있습니다. 자본과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미디어,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주권형 미디어가 크게 확산되고 강화되어야 합니다. 몸집만 키워가려는 미디어, 권력을 지향하는 미디어, 민심과 유리된 미디어로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나눔을 통해 더 큰 것으로 나아가는 자치와 분권의 정신이 기존의 미디어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펼치고 건강한 토론을 거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기 위한 '사상의 자유시장'을 활짝 열어줄 수 있는 국민주권형 미디어가 더 많이 만들어지고 더 크게 성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별, 계층별로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미디어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저는 풀뿌리 주민자치중심의 마을공동체미디어가 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발전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가치와 방향이 시대와 민의에 부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시대의 변화와 미래의 지향, 그리고 국민의 뜻을 담고 있다면 남은 것은 시간과 노력일 뿐입니다.

마을공동체미디어는 시골과 대도시를 구분하지 않고 전국 어디서나 가능한 ‘방방곡곡’ 미디어입니다.

마을공동체미디어는 국민의 역량으로 운영이 가능한 ‘국민중심’ 미디어입니다.

마을공동체미디어는 참여를 통해 행복해지고 그 행복을 전달하고 나누는 ‘공감과 연대’의 미디어입니다.

국민주권시대로 대표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요한 미디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며, 미디어정책의 한 가운데에 있어야 할 당위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그 전환점이자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저도 국회에서 풀뿌리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7. 3. 22.

국회의원 유은혜



축사

국회의원
최명길



안녕하십니까?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최명길입니다.

오늘 ‘생활정치와 자치분권의 시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활성화방안 세미나’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뜻깊은 행사를 함께 주최할 수 있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000년, 당시의 ‘통합 방송법’ 제정을 통해 ‘퍼블릭액세스’ 즉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하고 참여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제도화가 시작되었습니다. 6년 뒤인 2006년에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동체라디오’의 제도화가 이뤄졌습니다. 그 뒤로 다시 6년이 지나서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두도록 방송법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생활정치’와 ‘자치분권’이라는 화두를 놓고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활성화방안’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서울·성남·대구·공주·광주·영주 등에 7곳의 공동체라디오가 생겼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마을미디어사업’을 주요 시정과제로 추진해 서울 곳곳에 약 30여곳의 FM라디오, 인터넷라디오, 마을신문, 동아리 등이 다양한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도 다양한 마을신문과 인터넷라디오방송, 팟캐스트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2년 법개정 당시만 해도 부산과 광주 2곳에 불과했던 지역시청자미디어센터는 7곳으로 늘어났고, 앞으로도 더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문화부가 관할하는 여러 지역의 영상미디어센터, 지역MBC의 시청자미디어센터, 몇몇 지자체가 운영하는 미디어

센터 등이 전국 곳곳에서 시민들이 미디어를 직접 제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과거에 비해 크게 변화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탄핵 과정에서 광장에서 분출됐던 국민들의 목소리는 대한민국을 바꿨습니다. 일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낼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아지고 더 활발해진다면 마을을 바꾸고, 지역을 바꾸고,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한 여러 가지 과제가 있을 것입니다. FM공동체라디오가 아직 7곳인 것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많이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라디오들이 언제 어디서든 라디오 주파수만 맞추면 들을 수 있는 지상파공동체라디오로 허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이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해마다 확대되고 있는 시청자미디어센터가 마을공동체미디어와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을미디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서울시의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도 잘, 그리고 업그레이드되어서 전파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방통위·문화부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 예산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더 구체적이고 더 좋은 내용과 제안이 오늘 세미나에서 풍부하게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세미나의 좋은 제안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미방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행사를 준비하고 참여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7. 3. 22.

국회의원 최명길

▶▶▶ **축사**

국회의원
추혜선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추혜선 의원입니다.

‘생활정치와 자치분권의 시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활성화방안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마을의 언론은 지역정치인, 관변단체, 토호, 지방행정기관 등에 독점돼 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마을은 시민들의 삶터보다는 국가 통치구조의 하부 단위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로도 오랫동안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에 균열을 내고 지역주민들의 공론장을 역동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쌓여 비로소 삶터로서의 마을과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역할이 컸습니다.

마을공동체미디어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7개의 공동체라디오가 생겼고 TV·라디오·신문·잡지 등의 매체와 동아리들이 생겼습니다. 마을미디어 교육 및 활동 지원을 위한 각 지자체 등의 관심과 노력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마을공동체 사업과 함께 마을미디어 교육 및 활동 지원, 마을미디어 공방활동, 서울 마을미디어축제 개최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콘텐츠 제작과 활동을 위한 장비·공간·인력이 부족하

고 마을 주민들의 참여 기회도 많지 않으며 종합적인 교육 지원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제작한 콘텐츠를 유통할 수 있는 통로도 제한돼 있습니다.

이제 마을공동체미디어가 더욱 중요한 시기입니다. 광장에 모였던 촛불을 이제는 각자의 생활공간에서 켜고 모든 영역에서 권리를 확장해야 할 때입니다. 광장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이 또한 힘겹지만 한 투쟁이 아니라 문화와 소통이 있는 즐거운 과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서로의 삶과 의견을 드러내고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가 널리 보급되어 있습니다. 마을공동체미디어를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도 높고 그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오늘의 세미나가 더욱 시기적절하고 뜻 깊습니다. 누구나 미디어를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에서 정책적 지원과 제도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의정활동을 통해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 3. 22.

국회의원 추혜선



배경 및 취지

- 정치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건 국민·시민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음. 전국의 광장에 모인 시민의 힘과 요구에 부응하여 새롭게 출범하게 될 정부, 새롭게 재편되어야 할 우리사회는 자신의 생각을 일상적으로 직접 말할 수 있는 국민이 많아지게 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누구나 격차와 차별없이 정보를 얻고 비판적으로 해석하며, 이를 토대로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제시된 의견이 소통/조율되어 합의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함. 우리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생활과 가까이에서 이와 같은 과정을 일상적으로 겪고 학습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디어의 중요한 역할임.
- 광화문 광장에 모였다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시민들이 작지만 일상에 밀착된 문제들에 대해 서로 토론/갈등하며 합의/조정하여 함께 해결책을 찾고, 함께 찾은 해결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가 필요함. 크지 않아 직접운영할 수 있고, 가까이에서 있어 일상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고, 영리적이지 않아 공유/협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작고 일상적 미디어가 바로 '마을공동체미디어'임.
- 전국에 7개의 공동체라디오방송국, 영상/오디오/종이 등 다양한 매체를 다루는 수백 개의 마을미디어가 운영되고 있음.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미디어센터가 40여개가 운영되고,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교육이 확산되고 있으며, 시민이 직접 만든 콘텐츠는 주류미디어에 편성되고 있음. 그러나 파편화되어 연계되지 못하고 공적지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잠재되어 있음. 또한 한국의 미디어정책은 생활정치와 자치의 기본 단위인 지방정부의 미디어정책-자치미디어정책을 활성화시키는 것과 무관함.
- 이에 대의제정치와 중앙정부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지방자치/지방분권의 사회를 위해 직접미디어/자치미디어/분권미디어인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활성화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는 국회세미나를 갖고자 함.

개요

- 명 칭: 생활정치와 자치분권의 시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활성화방안 세미나
- 일 시: 2017년 3월 22일 (수) 오후2시~5시 30분
- 장 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 최

국 회

- 국회의원 노웅래(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국회의원 유은혜(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국회의원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 국회의원 최명길(더불어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국회의원 김경진(국민의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 국회의원 송기석(국민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 국회의원 추혜선(정의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지자체

-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대표 김영배 성북구청장)

민 간

-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디지털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
동북마을미디어네트워크, 언론개혁시민연대, 문화연대

- 주 관: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언론연대
- 후 원: 지역영상문화협동조합
- 주요내용
 - [영상상영] 마을영화 상영 및 사례소개
 - [세미나] 생활정치 및 자치분권 시대, 마을공동체미디어활성화 방안 발표 및 토론
 - [생중계] 전국 공동체라디오방송 및 마을방송과 연계하는 생중계

세부프로그램

○ 축사 및 인사말 ※변동 가능

- 국회의원 노웅래(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국회의원 유은혜(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국회의원 김경진(국민의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 국회의원 추혜선(정의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고삼석(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김영배(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대표/성북구청장)

○ 전체사회 허경(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사무국장)

[1부] 마을영화 상영 및 사례소개

<길들여 진다는 것> (다큐/13min) 상영 후 간단 사례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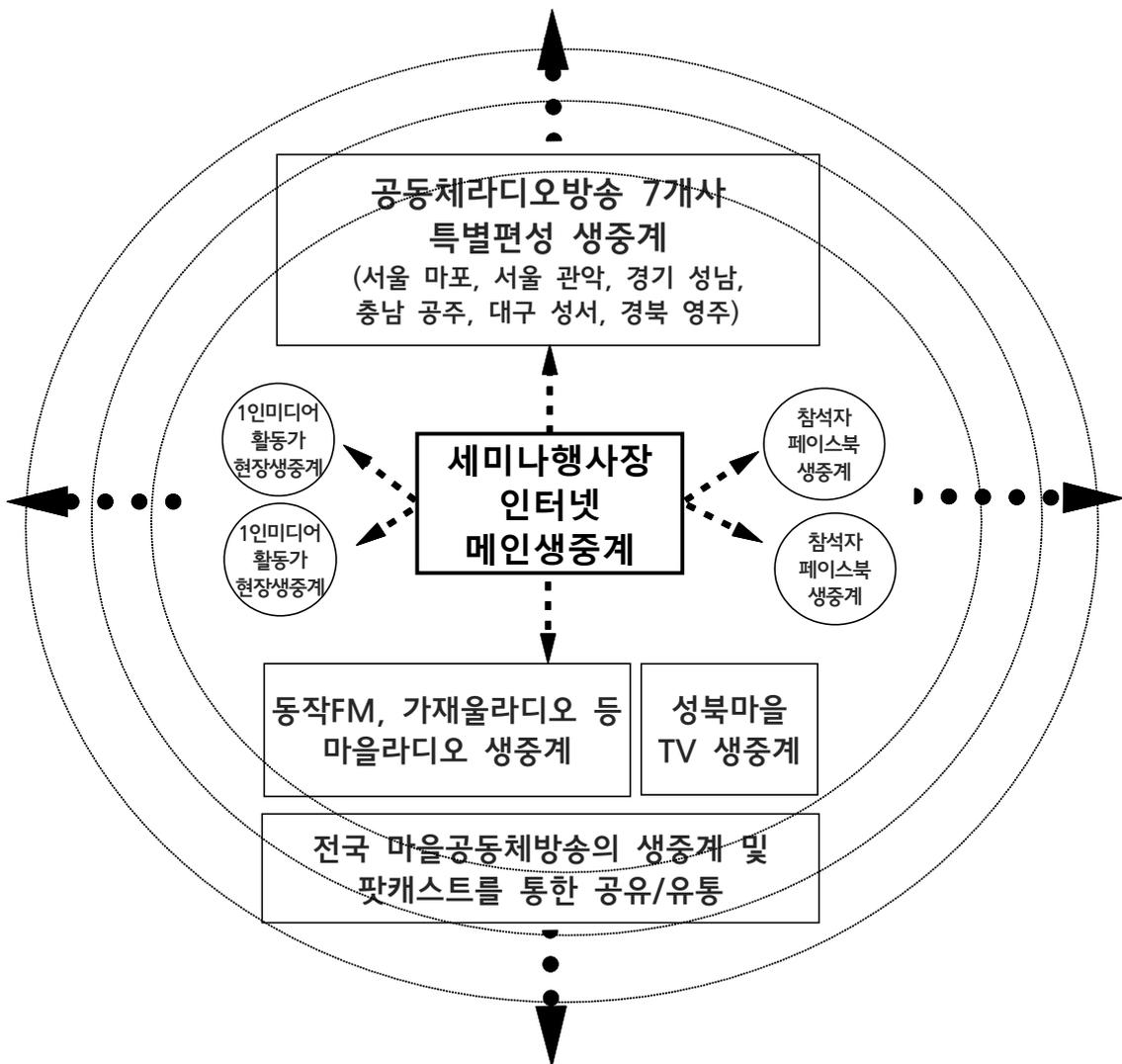
[2부] 생활정치와 자치분권시대의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방안

- 사회 원용진(문화연대 공동대표/서강대 신방과 교수)
- 발표
 1. 생활정치의 ‘학교와 광장’으로서 마을공동체미디어
이희량(공동체미디어활동가/중앙대 박사)
 2. 미디어자치와 자치분권
정수진(부산민연련 마을미디어연구소 소장)
 3.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의 전면적 재편 방안
최성은(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이사장/전북대 신방과 겸임교수)
- 토론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언론연대 정책위원)
김영숙 (대구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센터장)
안병천 (관악FM 대표)
유창복 (서울특별시 협치자문관/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이사)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성북창조문화도시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주훈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미디어엑트 부소장)

공동체라디오방송 및 마을방송과 함께 하는 전국 생중계

- 세미나 실황을 전국의 공동체라디오방송국과 마을방송들과 연계하여 생중계 함으로써 전국의 마을공동체미디어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함.
- 마을공동체미디어 및 1인미디어 활동가들이 자유롭게 현장 생중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공유를 가능하게 하고자 함.
- 생중계 운영담당: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관악FM), 가재올라디오, 동작 FM

운영개념도



▼ 전국 생중계 참여 마을공동체미디어 현황

○ 공동체라디오방송국 7개소

지역	대상
서울 마포구	마포FM
서울 관악구	관악FM
경기 성남시	FM분당
충남 공주시	금강FM
경북 영주시	영주FM
대구시 성서구	성서FM
광주시 북구	광주FM

○ 마을방송 22개소

지역	대상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라디오
서울 동작구	동작FM
서울 강서구	강서FM
서울 금천구	라디오 금천
서울 중랑구	미디어뺨
서울 은평구	우마미-틴
서울 은평구	역촌동 사람들
서울 용산구	용산FM
서울 성북구	성북FM
서울 성북구	성북TV(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서울 강북구	강북F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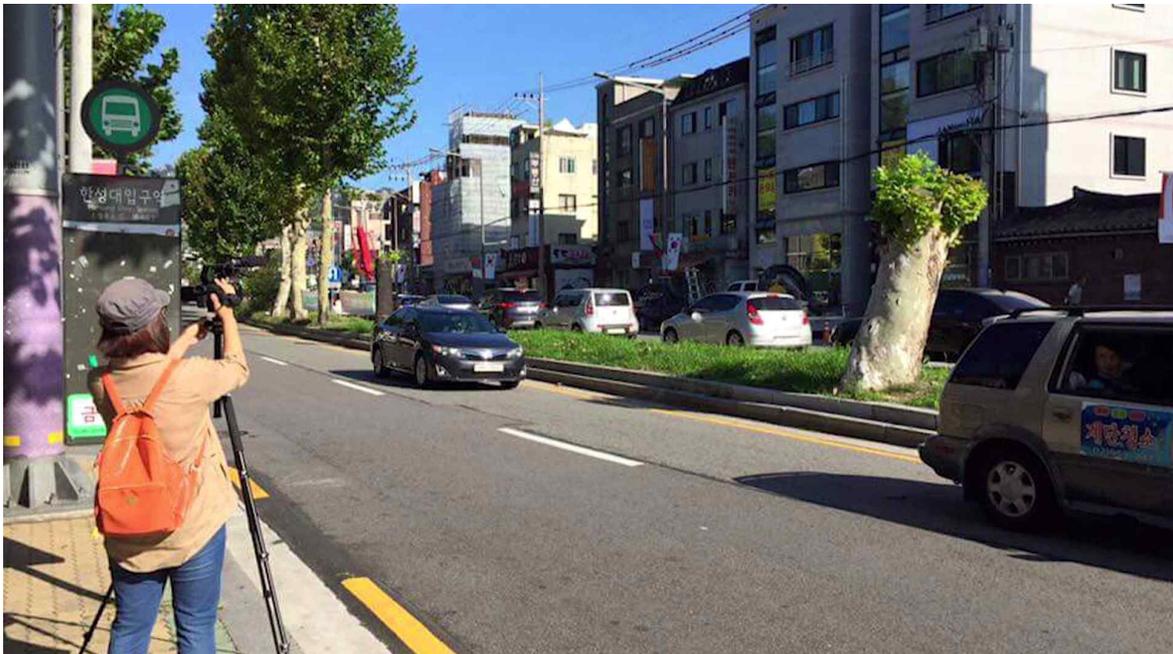
서울 서초구	서초생생소셜미디어
광주 광산구	도래샘ing 라디오
제주도 제주시	외도마을방송 LIVE소울
전북 전주	마을신문전주네트워크
전북 전주	우리동네TV(전주시민미디어센터)
전북 김제	라디오 김제
부산	부평깡통시장 라디오방송국
부산	서동 미로시장 라디오
부산	부산의 달콤한 라디오
부산	아미로 구구콘
강원 원주	원더풀 라디오

▶▶ 행사 시간 계획

구 분	시 간		행사 내용	비 고
준 비	12:00~13:30	90'	행사장 세팅	
등 록	13:30~14:00	30'	참석자 등록 및 입장	
1부	14:00~14:25	25'	개회/국민의례/축사	내빈소개 추가가능
	14:25~14:45	20'	1부 소개 및 영상상영 및 사례소개	
	14:45~15:00	15'	2부 무대 테이블 세팅	
2부	15:00~15:10	10'	2부 소개 및 패널 소개	
	15:10~15:25	15'	발표1	
	15:25~15:40	15'	발표2	
	15:40~15:55	15'	발표3	
	15:55~16:40	45'	지정토론	
	16:40~17:00	20'	플로어 토론	
	17:00~17:20	20'	추가 토론 및 내용 정리	
폐회	17:20~17:30	10'	기념촬영 및 폐회	

〈길들여진다는 것〉

(이상림 연출, 13분, HD)



2016년 여름, 풍치가 아름다운 성북동에서 50년 이상 중앙분리대 역할을 하며 그늘을 제공했던 거목 두 그루가 잘려지는 일이 발생한다.

이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은 공사를 저지시키고 나무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길들여진다는 것〉, 그리고 성북 마을미디어

2016년 여름, 성북동을 오랫동안 지켜왔던 나무 두 그루가 베어지면서 지역 주민들은 나무 곁으로 속속 모여들었다. 잘려진 나무를 두고 주민들은 함께 모여 애도하기도 하고 토론하기도 하고 항의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드디어 민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나무는 잘려진 밑동에 다시 싹을 틔웠다.

〈길들여진다는 것〉은 몇 개월에 걸친 이 일련의 과정을 차분히 기록한 다큐멘터리이다. 이 작품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사건이 지역 주민인 자신에게 미친 감정과 지역 사회에 가져온 의미에 대해 살펴본다. 이 다큐를 제작한 이상림씨는 전문 제작자가 아니라 불과 1년 전 처음 캠코더와 편집툴을 만져본 성북 지역 주민으로서 고3 수험생을 자녀로 둔 주부이다.

이상림씨 뿐만 아니라 나무를 둘러싼 이 사건을 기록한 주민들은 더 있다. 처음 잘려진 나무를 발견한 강의석씨. 그는 본능적으로 이 장면을 핸드폰 카메라에 담았고 이 장면은 다큐에 중요하게 쓰였다. ‘와보송’ 팀과 ‘동마을미디어소식’ 팀은 시시각각 변하는 현장의 모습을 각각의 마을뉴스로 만들어 지역 주민에게 그 때 그 때 전달했다. 마을잡지인 〈성북동천〉은 사건의 과정과 의의를 특집 기사를 통해 다루었다. 이들은 모두 성북에서 활동 중인 마을미디어 활동가(단체)들이다.

성북구에는 거의 모든 주요 행사나 현장에 언제나 주민들이 든 카메라가 존재한다. 그들은 청소년일 수도 있고 주부일 수도 있고 어르신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영상은 마

을뉴스로 제작되거나 그 영상을 소스로 사용한 토크쇼 혹은 토론 프로그램으로 변신하기도 한다. 이 모든 영상물들은 <성북마을TV(www.sbtv.kr)>를 통해 방송되어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데, <성북마을TV>에는 누구나 자신이 만든 콘텐츠를 가감없이 방송할 수 있고 누구나 언제든지 출연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성북구는 2015년부터 마을민주주의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육성, 지원하고 있다.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현재 40여개의 마을미디어 단체들이 활발히 활동 중이며, 작년 7월 개국한 <성북마을TV>를 통해 이미 300여 편의 영상콘텐츠, 보이는 라디오 콘텐츠가 방송되어 5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출연하였다. 이를 통해 마을과 마을주민들의 소중한 스토리들이 겹겹이 쌓이고 있으며,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주요 현안과 이슈에 대해 이야기하고 토론함으로 마을의 변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발표1.]
마을공동체미디어,
풀뿌리 정치의 학교와 광장

공동체미디어활동가/중앙대학교 강사
이희랑

마을공동체미디어, 플뿌리 정치의 학교와 광장

이희량 -공동체미디어 활동가/중앙대학교 강사

2017.3.10. 자화상

- 우리나라가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권력구조가 타협과 숙의(熟議)를 중시하고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투명한 절차와 소통을 통해 민주적으로 조율하여 공정한 권력행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과도하게 집중된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방법은 정부형태의 변경과 함께, 중앙집권적인 권력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여 주민근거리(住民近距離)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나타난 시대정신은 통치보다는 협치, 집권(集權)보다는 분권,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행사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다.

출처: 2017.3.10. 박근혜 대통령 탄핵판결, '안창호 재판관의 보충의견' 에서

정치패러다임의 변화



정치패러다임의 변화

• 정치적인 것은

아렌트

- 인간의 조건, 공적 영역에 '드러나' 소통하고 실천하는 행동
- 다수의 인간들은 오로지 '노동'만 하는 노동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스스로 실천하고 소통함으로써 정치하는 공론영역에 등장하지 못함으로써 정치는 통치로 왜곡되고 전체주의로 변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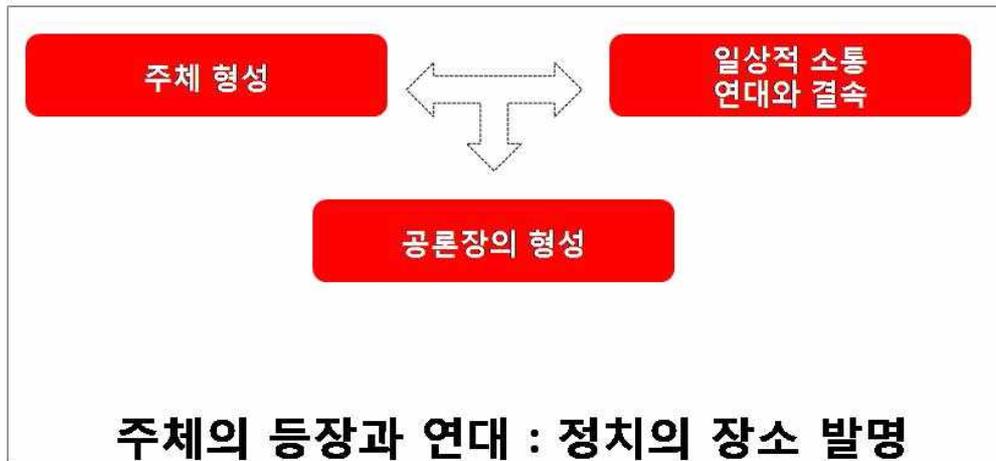
랑시에르

- 뭉이 없는 사람들이 뭉을 드러내 보이고 목소리를 내어 불화를 드러내는 행위
- 어떤 갈등과 문제를 봉합하는 것이 아니고 드러냄으로써 새로운 관계와 구조를 상상하고 구축해 가는 과정

푸코

- 시민이 형성되는 일상적인 미시적 층위에서 끊임없이 변형되고 재구축 되는 것
- 해방의 과정으로서 관계 맺기의 접합과정의 역동성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



“정치의 장소는 우리의 삶이 지속되는 그러한 시·공간들의 장소들, 이를테면 공장과 지역, 가족과 교실 바로 그러한 곳에 위치한다. 인간의 정치적 본성의 구현은 이러한 생활세계의 토대 위에 ‘공동체’, 정치적 장소를 발명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치의 장소는 누구나가 존재해 온 ‘생활세계’의 지평 그 자체이다.”

공동체미디어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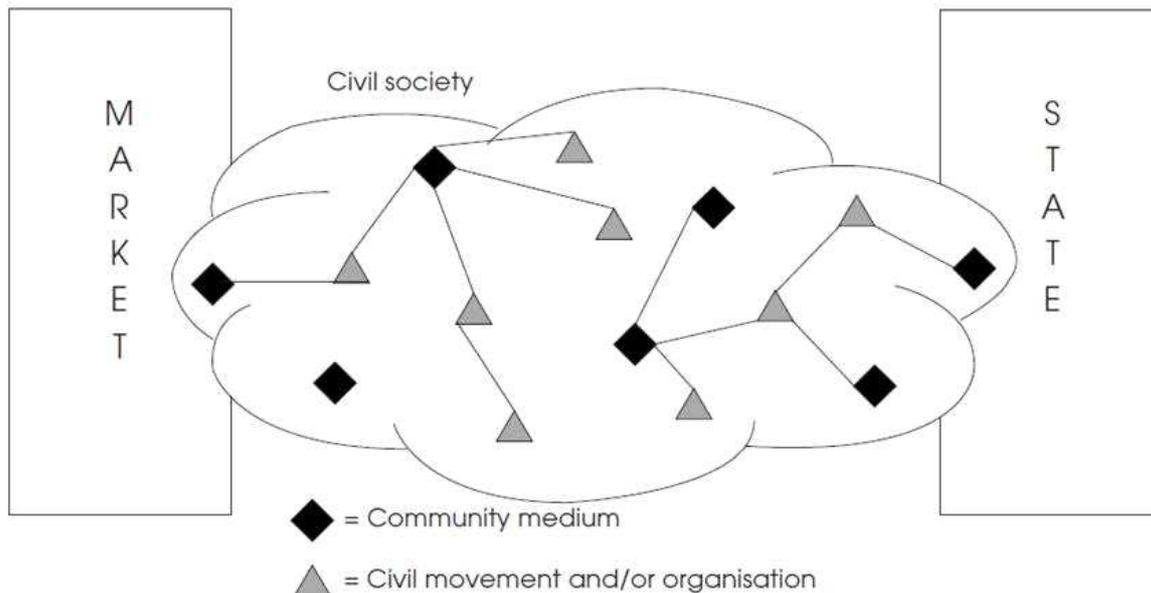
- 풀뿌리 또는 지역에 기반을 둔 미디어로, 주류미디어들의 표현과 형식에 문제의식을 갖고, 표현의 자유와 참여적 민주주의에 헌신하고자 하며 공동체의 관계를 형성, 재형성 하며 공동체의 연대를 진작시키는데 전력을 다하는 미디어 (Howley, 2005)
- 지역구성원들과 공동체들의 참여를 통해서 지역 자본(상징자본, 사회자본등)을 생산하고 공적영역의 기능을 하는 지역미디어 (이만제, 2003)
- 지배적 담론에 반하는 담론과 주류적 관계에 대응하는 풀뿌리 같은 리좀적 관계들이 새롭게 형성하는 담론 공간 (Capentier, et al, 2003)
-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변화에 직접 주체로 참여하며 대화적 소통을 통해 미시적, 중시적, 거시적 소통 공간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대안적 담론 활동 (채영길, 2015)

공동체미디어의 Positioning

	Media - centered	Society-centered
Autonomously identity of CM	Serving the community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Part of civil society</div> Rhizome
Identity of CM in relation to other identities	An alternative to mainstream	

<출처:Capentier, et al. 2007, 220)

- 공동체 지원과 발전으로서 : 공동체에 의미 있는 주제들을 의제화하고, 공동체를 입증하고 강화. 구성원들의 접근과 참여 보장
- 대안적 미디어 영역으로서 : 주류미디어와 '다른' 미디어 재현과 생산, 사회적 목소리의 다양성과 자기 재현 강조
- 민주적 시민사회의 공론장으로서 : 시민사회에서의 공론장 기능 강조, 공동체미디어를 통한 사회 민주주의 강화. 공적논쟁에 대한 광범위한 참여와 실천
- 리즘으로서 : 서로 다른 다양한 사회 운동과 공동체, 사람들이 네트워크되는 교차로, 보다 급진적으로 민주주의를 촉진



<출처:Capentier, et al. 2007, 231)

공동체미디어의 사회적 특징

• Articulation (Howley, 2010)

-발화 그리고 연결 (speaking & act of joining)

분리되어 있는 그룹들과 개인들 간에 집단적인 연대와 정체성을 공유하는 그러한 감각을 만들어 낸다는 측면에서 커뮤니케이션과 상징 실천들의 역할을 강조.

-소통을 통한 공동체 발명. "차이 속에서의 결합", 문화의 다양성, 혼성성 생산

①어떻게 서로 연결되는가 (연결의 과정)

②제도의 역동성과 재연결성

③Agency로서의 주체의 변화와 실천

• social networks creates through constituency relationships

(Fairchild, 2010)

-주민 관계를 통해서 생성되는 사회적 네트워크

①공동체미디어는 자발적인 실천을 통해 등장하는 시민사회의 불가피한 부분이다.

②공동체미디어는 시장 원리에 기반하는 것이 아닌, 의미를 통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③공동체미디어는 참여자들이 콘텐츠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식을 통해서 연결되고 만나는 과정에 의해서 구별된다.

④공동체미디어는 규율성과 역동성이 공존하는 과정이다.

• '공동체방송'의 특성 3가지 (김은규, 최성은, 2013)

첫째, 가장 근본적인 특성은 **공동체의 참여**다. 여기서 참여는 단순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방송의 편성, 행정, 운영, 재정, 평가는 물론 소유에 있어서도 공동체의 참여가 보장된다는 의미이다. 즉 참여는 공동체방송에 대한 **소유(ownership)**과 **통제(control)**와 연관되어 있다.

둘째, 공동체방송은 **비영리적(non-profit)**이다. 이는 공동체방송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미디어가 아니라는 것이다. 비영리적 조직에 의한 운영과 비영리적 커뮤니케이션 활동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한다.

셋째, 사회적 서비스 제공이다. 사회적 서비스 제공은 공동체방송이 공동체에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 지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공동체의 요구와 이익을 반영하고 공동체방송을 통해 사회적 발언의 기회를 획득하는 표현의 자유의 장으로서 공동체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이념이 내재되어 있다.

한국의 마을공동체미디어

• 소출력 공동체라디오

- 2000년, 통합방송법과 함께 제도화 물살
- 2004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 2009년 정식으로 주파수 면허를 허가 받아 운영
- 관악 FM, 마포 FM, 성서 FM등 전국 7곳 운영



• 마을공동체미디어

- 근거리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소유하는 비영리적 미디어로, 소통, 문화, 여가, 만남의 장이자 지역 공론장으로써 기능하는 마을 소통 공동체
-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 민주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지원 시작
-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라디오, 영상, 신문, 웹진 등 다양한 형식의 수 백 개가 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마을공동체미디어 현장

• 창신동 라디오 덤, 봉제노동자방송



그리고 '동대문그여자'

- 2012년 서울시우리마을미디어 문화교실 <창신동 여인네이야기>로 시작
- 2013년 창신동라디오방송국 덤 개국

-2013년1월~ 2014년9월 여성봉제인 방송 <'쌩쌩~그러나 조금은 쉬기도 하는 시간>
: 봉제인들이 세상에 전하는 사연과 음악, 세상살이에 대한 즐거운 수다의 장

"안녕하세요. 세계 유일의 봉제 미싱사 방송, 창신동 라디오 <덤>의 디제이 '동대문 그 여자'입니다. 후암동 한xx씨 사연입니다. 성주에서 올라와 1978년 남대문 옷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80년대 초 밤새 심지를 박다가 졸아서 프레스에 화상을 입었는데 병원도 못 가고 눈치가 보여서 약 바르고 봉대 감고 또 일했습니다. 저도 지금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봉제를 하면서도 대우해 주고 대우받고, 공장주께서도 공임 너무 싸게 책정하지 마시고, 봉제하시는 분들 건강 챙기시고 골병 들지 마시라고 이 글 띄웁니다. 봉제인 여러분, 잘 살아 봅시다!"

* "쌩쌩~" 방송 내용 중에서

-2014년 창신동라디오 덩과 함께 하는 '봉제마을 살길 찾기' 간담회 방송
: 창신동 봉제 불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방송



동그: 이곳에서 생활도 하시고, 일도 하시는 주민으로서 생업으로서의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정용조: 첫째는 일거리가 너무 들쭉날쭉 해서 생활이 안정이 안되고, 그러다 보니, 돈을 벌어야 할 때 정말 한계까지 갈 때까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그런 상태, 생활이 전혀 안정이 안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것 같아요.
동그:계획이라는 것을 세울 수도 없고, 뭘 배운다던가 여행 같은 것은 정말 생각도 할 수 없는.

정용조:자기 삶을 자기가 살지를 못하고, 거의 끌려가다시피 사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불행하게..보일 정도로..직업자체가 창신동의 대부분이 봉제업으로 업을 삼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아 이걸 아니지 않나...

*봉제마을 살길 찾기 간담회 방송 중에서

- 2015년 주민자치위원 활동
- 2016년 마을공동체 소통공작소 씨앗모임 결함, 봉제 교육 강사 활동 시작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들이 전하는 '조곤조곤' 마을이야기

"나는 내가 우리 동네에 들고 나고 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 거기에서 연결고리가 되고 싶은 거 같아"



마을공동체미디어 현장

• 마포 FM -레주파의 L양장점 그리고 '우야'



-2005년 정규편성.
-여성, 성소수자로 사회적으로 이중으로 소외된 레즈비언들이 같이 이야기 하고 사회와 소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
-성소수자들의 일상의 경험과 감정, 사고를 나누고,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라디오 방송 운영

- 방송을 통한 성소수자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 뿐만 아니라
- 지역의 다양한 단체들과 함께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특강 및 포럼, 교육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 퀴어문화축제,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그리고 마을공개방송 등의 공론의 장에서 여성 성소수자로서의 주체적인 발언과 행동을 해옴
- 국내 최초 그리고 유일한 레지비언 공중파 라디오 프로그램

"L양장점을 만들면서 제 삶이 바뀌었어요. 라디오를 통해 내 또래 친구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는 경험을 하고, 오프라인 모임도 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운동도 하고... 저는 알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했어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그게 다시 만나서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그분들에게 제가 레즈비언이라고 밝히지는 못했지만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레즈비언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도 그 사람의 반응이 달라지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올해 하려고 하는 제 개인적인 프로젝트는, 마포에서 계속 살 거니까 우야식당 계속 해서 사람들이랑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그걸 팟캐스트로 만들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쿼어 친구들만 오는데, 다양한 사업 통해서 동네에 있는 청년들을 만나고 싶어요. 꼭 성소수자가 아니더라도, 성소수자든 비성소수자든 상관없이 그냥 마을에서 놀고 싶어요. 이상한 것도 하고. 그러면 재밌겠죠."

"이 세상 자체가 장애인만 따로 살고, 어르신만 따로 사는 게 아니라 공존해서 사는 거잖아요. 성소수자도 마찬가지고요. 다 같이 잘 사는 방법을 계속 고민해봐야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거예요."

* "성소수자-비성소수자, 다 같이 잘사는 마을을 꿈꿔요"
오마이뉴스 기사, (2015.3.14) L양장점 활동가 '우야' 인터뷰 내용 중에서

마을공동체미디어 현장

• 성서 공동체 FM - 주민 발언대

-3거리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달자: 주민제보를 바탕으로 3거리 주변 아파트 주민들과 장애인, 유치원 등 관계기관(구청,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들의 의견을 방송하고 주민토론회 개최

-성서지역 공공도서관 만들기: 도서관이 없는 지역의 주민모임(좋은 도서관 만들기 성서지역 엄마모임)과 방송국이 함께 진행. 주민모임이 주체가 되어 주변 도서관 탐방 조사, 주민서명운동, 지방선거 출마 의원들 공개질의, 언론홍보활동 등 진행. 주민토론회도 개최(구청 관계자 참여). 실제 도서관 건립을 이끌어냄



*최성은, AMARC ASIA-PACIFIC REGIONAL CONFERENCE 발표에서

마을공동체미디어 현장

• 성북마을TV, 와보송, 마을잡지가 함께 한 마을 현안

- 2016년 여름, 성북동 나무를 둘러싼 이슈가 지역 현안으로 떠오름
-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이 약 4개월에 걸쳐 거의 모든 과정을 취재
- 현장 및 관련 모임, 공청회 등에 언제나 주민이 든 카메라가 존재했음
- 와보송 성북마을뉴스, 동마을미디어소식을 통해 영상뉴스로 제작, 방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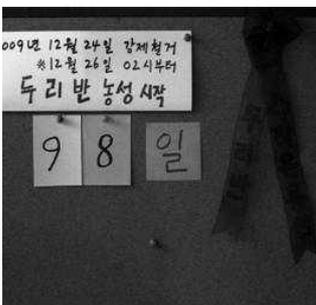
- 종합적으로 사건의 전체 과정을 담고 그 의의를 탐구한 다큐멘터리가 제작됨
- 2017년에는 지역 현안을 다루는 주민 토론 프로그램을 월 1회 제작할 예정

마을공동체미디어 현장

• 마포 FM - 송덕호의 씬박시사

-두리반 철거, 아현 뉴타운 개발 반대 투쟁 기록과 연대

- 철거와 봉쇄로 고통을 당하는 거주 당사자들에게 매일 전화 연결을 해서 인터뷰
- 관계자 초대를 통해서 문제점에 대한 토론과 진단



“(아현 뉴타운 개발 사건에서) 조합 쪽에서 그동안 그 사람들이 출입했던 출입구가 있었는데, 출입을 못 하게 아예 봉쇄버린 거예요. 매일 방송을, 매일 방송으로 연결을 하자. 아침에 제가 하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한 군데에 3분에서 5분씩 전화 연결을 했었고요. 그거는 뭐, 별거 없었어요. 전화인터뷰였어요. “어제 저녁에 잘 주무셨습니까? 추우신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런 정도. 마포FM만 계속 그렇게 인터뷰를 했었고 그래도 어떻게 길이 만들어지고 통로가 생기는 날도 우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마포FM 때문에 자기가 살았다고.” 그게 사실 지역에 있는 공동체 라디오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들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되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지역의 어려운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을 하게 되어요.”

* 김에란 외, “공동체는 발명되어야 한다” 에서 재인용

마을공동체미디어 현장

- 용산 FM -굿바이, 용산화상경마장
-용산화상경마장 반대 투쟁을 위한 기록과 연대



▲ 2014년 6월 28일, 마사회는 주민 물결 기습 개장을 했다. 교사와 학부모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물결 기습 개장을 막았다.

“우리가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고 함께 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 하는 시간”

“우리는 전문 시위꾼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엄마 아빠들이고 선생님이란 것을 알리고 싶었다.”

“화상경마장의 문제점도 굉장히 심각한데 이러한 점들을 좀더 자세히 외부에 알릴 방법이 필요했다.”

“천막야간지킴이를 하는 아빠들, 낮에 천막을 지키는 엄마들, 주말에 천막을 지키는 선생님들, 청와대에 엽서를 보내고 용산화상경마장 철회를 위한 입법 청원을 하고 화상경 마장 반대 동영상을 만드는 등 자신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해 애쓴 성심여중고 학생들, 우리에게 힘을 보태준 시민단체들그리고 4년간 가장 맨 앞에서 고생하고 있는 공동대표들을 섭외 대상으로 정했다.”

* 변정은, 2016 서울마을미디어축제 포럼 '지역갈등 마을미디어로 풀다' 발표 내용 중에서

마을공동체미디어 현장

- 동작 FM-낭만과 전설의 동작구

-지역 주민이 찾아 나서는 동작 지역의 옛 이야기, 역사, 인물, 전설에 대한 토크방송



“우리 조상들이 산 동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위적인 행정구역, 잦은 이사의 서울 ...역사를 매개로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싶었다”

*DJ 김학규의 개인블로그에서

“지배문화에 대한 저항의 아카이브로서, 일상의 아카이브는 오늘을 기록하는 방법론으로서 입체적인 서술이 가능하도록 근현대사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임은 물론, 기록을 생산하는 구성원들의 능동적 참여를 필요로 하는 ‘모두의’ 아카이브라는 특성상 공동체 구성원 간의 소통을 매개함으로써 공동체의 재구성에 필연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손동유 등,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활성화 방안’에서 발췌

마을공동체미디어 현장

- 동작 FM - 청년들의 길거리 토크쇼 '수고했어 오늘도!'



수고했어, 오늘도!

1부 토크쇼

초대손님: 임경지 (인디밴드유니온 휘윙크)
 "청년, 서울에 살다-청년에게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하여"

2부 공연

밴드 님타사막별
 진행: 신승기, 김희재, 사공성고
 (동작FM '청년한 열매' DJ)

2015. 9. 22 (화) 저녁 8시
 1호선 노랑진역 광장

주최: 동작FM 지원: 사랑의손동작
 사랑의손동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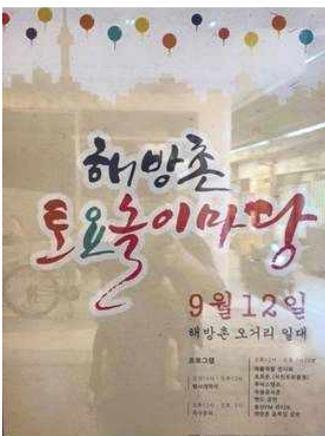


*동작 FM 국장 양승렬 인터뷰 중에서

"동작 FM이 있는 곳이 노랑진인데 여기가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지만 실제로 청년들이 주체가 돼서 뭔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화나 복지 많지 않아요. 그런 문제를 고민하다가,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버스킹 공연을 해보자 한거죠. 청년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를 가지고서 주거문제, 청년들의 취업문제, 노동권 문제 등등 이런 것을 가지고서 길거리에서 토크 콘서트, 이런 것도 열고 있고요."

마을공동체미디어 현장

- 용산 FM - 해방촌 토요일이마당 라디오공개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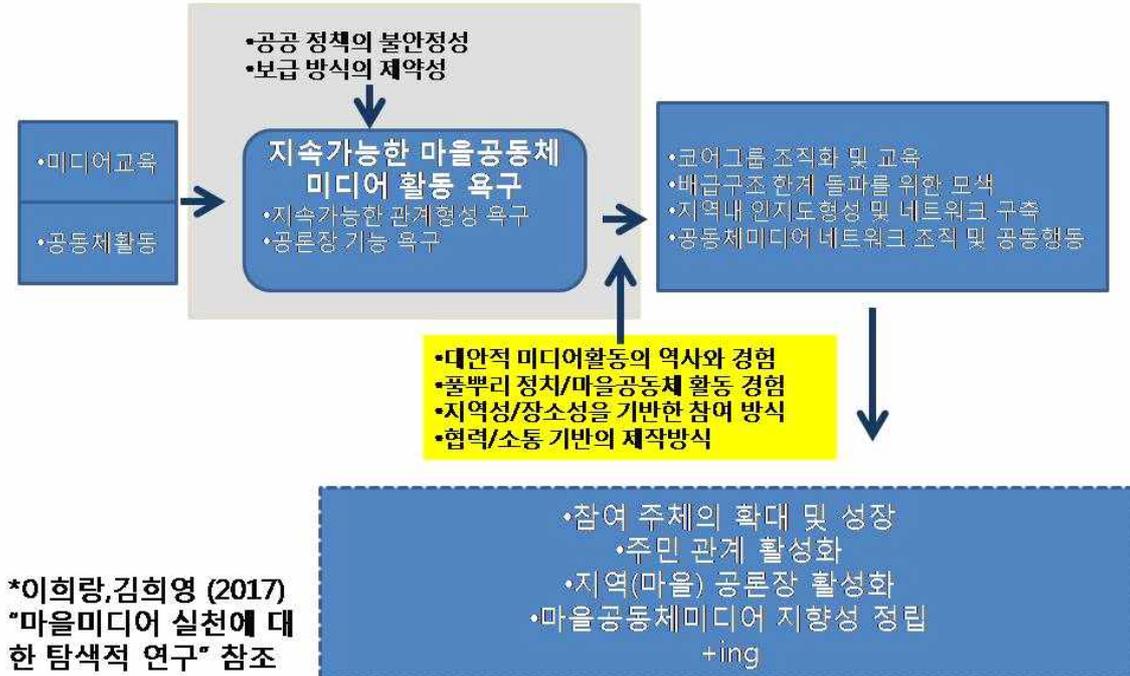
"특별한 물리적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사람들을 묶어내는 것은 그들이 일상의 기반을 통해서 자신의 공동체의 사건들, 사람들을 인지하도록 촉진시킬 수 있다"



*사진 출처: 서울마을미디어축제 '오늘의 마을', 공동체라디오, 마을미디어 홈페이지 등



마을공동체미디어 실천 모형



공동체미디어의 사회적 영향

- * 민주화 과정 (Democratization processes)
- * 좋은 거버넌스와 공공책임 (Good governance & Government accountable)
- * 공공의제 설정에 있어 시민들의 참여 (Citizen participation in setting public agenda)
- * 평화 구축 및 분쟁해결 (Peace building and conflict resolution)
- * 여성의 임파워먼트(Empowering women)
- * 소외된 사람들에게 접근과 목소리 부여(Giving access and voice to the excluded)
- * 사회적 포용과 연대 (Developing social inclusiveness and solidarity)
- * 빈곤감소(Poverty reduction)
- * 언어의 다양성 유지 및 촉진 (Defending/promoting language diversity)
- * 문화적 다양성 유지 및 촉진 (Defending/promoting cultural diversity)
- * 자연재해 예방 및 구호(Natural disaster prevention/relief)
- * 사회개발(development)

*최성은, AMARC ASIA-PACIFIC REGIONAL CONFERENCE 발표
내용에서 CR' s Social Impact Index- AMARC(2007)

•참고 자료들

- 김예란, 김용찬, 채영길, 백영민, 김유정 (2017). 공동체는 발명되어야 한다.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81호, 218-252
- 김은규, 최성은 (2013). 정규방송 도입 이후 공동체라디오 운영 구조 및 정책에 대한 평가적 고찰. <언론과학연구>, 제13권 3호, 184-214
- 변정은 (2016). 서울마을미디어축제 포럼 '지역감동 마을미디어로 풀다'.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5번째 서울마을미디어축제, 오늘의 마을.
- 손동유, 이경준 (2013).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활성화 방안. <기록학연구>, 통권35호 161-206
- 이만재 (2003). 소출력 FM 도입을 위한 일본 사례 연구. <방송연구>, 209-234
- 이희량, 김희영 (2017). 마을미디어 실천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81호, 253-299.
- 채영길 (2015). <커뮤니티미디어 이론과 실천>, 커뮤니케이션북스
- 최성은 (2013). 한국의 공동체라디오의 사회적 영향력 평가, AMARC ASIA-PACIFIC REGIONAL CONFERENCE 발표자료
- 오마이뉴스 기사, (2015.3.14) "성소수자-비성소수자, 다 같이 잘사는 마을을 꿈꿔요"
- 관악 FM www.radiogfm.net
- 마포 FM mapofm.net
- 성서 공동체 FM www.scrifmocr
- 동작 FM www.facebook.com/dongjakfm/
- 성북 마을방송 외보송 www.sb-wabs.net
- 용산 FM www.facebook.com/yongsancommunityradio
- 창산동 라디오팀 <http://caferave.com/radiodum>
-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 <http://sbvdc/>
-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maeulmedia.org
- Arendt, H. (1958). *The human condition*. 이진우·태정호 역 (1996). <인간의 조건> 한길사.
- Carpentier, N., Lie, R., & Servaes, I. (2003). *Community Media: muting the democratic media discourse*, *Journal of Media & Cultural Studies*, Vol. 17(1), 51-68
- Carpentier, N., Lie, R., & Servaes, I. (2007). Multitheoretical approaches to community media: Capturing specificity and diversity. In K. Fuller (Ed.), *Community media* (pp. 218-235). NY: Palgrave Macmillan.
- Cruikshank, B. (1999). *The will to empower*. 심성보 역 (2014). <시민을 발명해야 한다>. 갈무리.
- Fairchild, C. (2010). Social solidarity and constituency relationships in community radio. In K. Howley (Eds.), *Understanding community media* (pp. 23-31). SAGE
- Foucault, M. (1980).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 other writings 1972-1977*. Pantheon.
- Howley, K. (2005). *Community media: People, place,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 Howley, K. (2010). *Understanding community media*. Thousand Oaks, CA: Sa.
- Jankowski, N. (2003). Community media research: A quest for theoretically-grounded model. *The Public*, 10(1), 5-14.
- Rancière, J. (1998). *Aux bords du politique*. 양창렬 역 (2008).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도서출판 길.

[발표2.]
미디어자치와 자치분권

부산민연련 마을미디어연구소 소장
정수진

미디어 자치와 자치분권

자치를 위한 마을공동체미디어의 가능성

부산민언련 마을미디어연구소

정수진

한국사회의 마을공동체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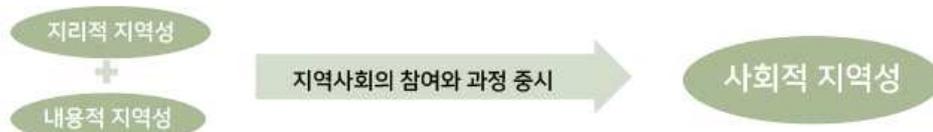
- 마을공동체미디어는 공동체에 기반한 다양한 활동과 이슈 그리고 미디어 유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지리적, 역사적, 정치사회적인 맥락에 따라 다양한 변화와 역동성을 지닌다.



마을공동체미디어와 지역성

- 지역구성원들과 공동체들의 참여를 통해서 지역 자본(상징자본, 사회자본등)을 생산하고 공적영역의 기능을 하는 지역미디어 (이만제, 2003)
- 풀뿌리 또는 지역에 기반을 둔 미디어로, 주류미디어들의 표현과 형식에 문제문제의식을 갖고, 표현의 자유와 참여적 민주주의에 헌신하고자 하며 공동체의 관계를 형성, 재형성 하며 공동체의 연대를 진작시키는데 전력을 다하는 미디어 (Howley, 2005)
- 지역에 위치하며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비형식적인 미디어 (Caton-Rosser,2006)
- 주민 관계를 통해 생성되는 사회적 네트워크로서 시장 원리에 기반하는 것이 아닌, 의미를 통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존재 (Fairchild, 2010)

하이퍼로컬미디어



- 지역밀착 또는 세분화된 지역성을 강조하는 미디어(Baines, 2012)
- 온라인 뉴스나 미디어 콘텐츠를 지리적으로 규정된 작은 규모의 공동체에 제공하는 서비스 (Radcliffe, 2012)
- 지역공동체 구성원간의 소통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지역민의 참여를 중요시함 (김재영·한상헌, 2015)
- 지역 아카이브로 보존되어지는 중요한 공공 기록(public record)

마을공동체미디어와 공공성

- 지역구성원들과 공동체들의 참여를 통해서 지역 자본(상징자본, 사회자본 등)을 생산하고 공적영역의 기능을 하는 지역미디어 (이만제, 2003)
- 한국사회에서 공동체라디오의 사회적 영향
1)공공의제 설정에 있어 시민들의 참여 2)소외된 사람들에게 접근과 목소리 부여
3)여성의 능력 개발 4)언어, 문화 다양성 유지 및 촉진 등 (최성은, 2007)
- 국가의 권력과 자본의 상업논리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인 미디어 (이해랑, 2013)

마을공동체미디어와 공공성

- 마을미디어는 공동체의 소통 자원으로서 공동체 공론장을 조직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주체이자 대상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2013)
- 공동체라디오는 미디어 다원주의와 다양성, 지역성, 미디어리터러시, 사회통합, 지역 재난 방송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김은규, 2014)

미디어 환경의 변화



마을공동체미디어 사례-부산 반송동 <반송사람들>



1997년 2월부터 주민들의 회비로 제작하기 시작

1998년 7월부터 <반송 사람들>이라는 제호로 마을신문 발행, 한 회 발행부수는 6000부

마을의 의제를 공유하고 확산하는데 큰 역할
-마을 가로등 실태 조사
-보행도로 불편사항 조사

2014년 11월 건설 폐기물 관련 시설 건립 기사로 지역 공론장 역할

마을공동체미디어 사례-전주 평화동 <평화동 마을신문>



2010년 5월 창간 준비호, 8월 정식 창간, 매달 1일 3000부 발행, 다양한 플랫폼 운영

지역의 저수지 '지시제'의 오염실태를 기사화

현황 조사와 주민인터뷰를 통해 문제제기 이후 마을신문 주관으로 주민토론회를 열고 지역의 환경단체와 연대

지속적인 후속 보도로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냄

자치와 분권 그리고 마을공동체미디어

- 자치를 위한 주민참여는 단순히 지방행정의 결정과정에 개입하는 수준을 넘어,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 자치는 자기결정권의 시작 => 자기발언권의 시작
-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 공동체의 여러 활동이 주민에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디어가 있어야 한다. 미디어가 바로 그런 지역의 문제나 논의, 대화 이런 것들을 계속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미디어가 해야만 하고 그런 마을 미디어가 필요하다.”
 - 마포 FM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가

자치와 분권 그리고 마을공동체미디어

- 쿠르베르타리스의 권력의 9가지 속성 가운데 여섯 번째인 정치적 현실의 구축과 해체로서의 권력: 미디어에 의해 창조되고 파괴되는 권력, 매스미디어는 특정 정치 쟁점을 논의하고 일반 대중에게 전달한다. 이 과정에서 이 정치적 쟁점은 미디어에 의해 선별되고 해석되는데, 이로서 그 정치적 쟁점은 창조되고 그것은 현실정치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정치사회학, 1998)
- 정치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그동안 배제되었던 주체, 대상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지역(마을)의 목소리를 내는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미디어콘텐츠가 갖는 대안성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삶을 열어 내는 매개체로서의 마을공동체미디어가 갖는 정체성이 이해되어야 한다.

자치와 분권 그리고 마을공동체미디어

- 마을공동체미디어의 다원적 접근에 따른 특징

	미디어 중심	사회 중심
공동체의 자치성 강조	관점1: 공동체에 기여하고 보조	관점3: 시민사회의 부문
공동체 사회적 관계성 강조	관점2: 주류에 대한 대안	
		관점4: 리즘

*서로 다른
다양한 사회 운동과 공동체,
사람들이 만나고 협력하는교차로

*보다 급진적으로
민주주의를 촉진

*경직된 것을
불안정하게 하기

- 자치와 분권을 위한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촉진하는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관심

참고 자료

- <공동체 라디오와 지역 공동체 구성원의 상호작용에 대한 현장연구> 반명진, 김영찬 (2017)
- <공동체 미디어의 담론 흐름과 연구경향> 강진숙 (2017)
- <공동체는 발명되어야 한다> 김예란, 김용찬, 채영길, 백영민, 김유정 (2017)
- <공동체라디오> 최성은 (2014)
- <마을공동체미디어 생산자의 미디어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정용복 (2017)
- <마을미디어 실천에 대한 탐색적 연구> 이희량, 김희영 (2017)
- <마을미디어에 대한 연구> 정수진 (2016)
- <미디어는 공동체에 어떠한 기여를 해야 하나> 원도연 (2016)
- <부산마을미디어가이드북> 김유진, 박정희, 복성경, 정수진 (2015)
- <서울시 마을공동체미디어와 공동체 공론장의 분화와 재구성> 채영길, 김용찬, 백영민, 김예란, 김유정 (2016)
- <전주지역 마을미디어 현황과 전주시민미디어센터의 역할> 고영준 (2016)
- <한국의 공동체라디오의 사회적 영향력 평가> 최성은 (2014)

고맙습니다

부산민연련 마을미디어연구소

<http://cafe.daum.net/communitymedia>

[발표3.]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의 전면적 재편 방안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이사장/전북대 신방과 겸임교수
최성은

미디어민주주의를 위한 공동체미디어 정책의 전면적 재편방안

2017.0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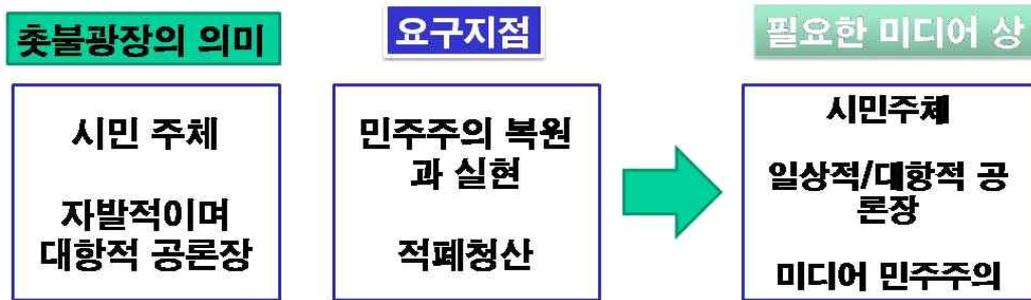
최 성 은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이사장)

• 목 차

1. 들어가며
2. 공동체미디어 의의 와 필요성
3. 국내 공동체미디어 정책 관련 현황
4. 공동체 미디어 정책 전면적 재편방안
5. 나가며

1. 들어가며

촛불광장의 경험과 요구가 주는 향후 미디어 정책의 방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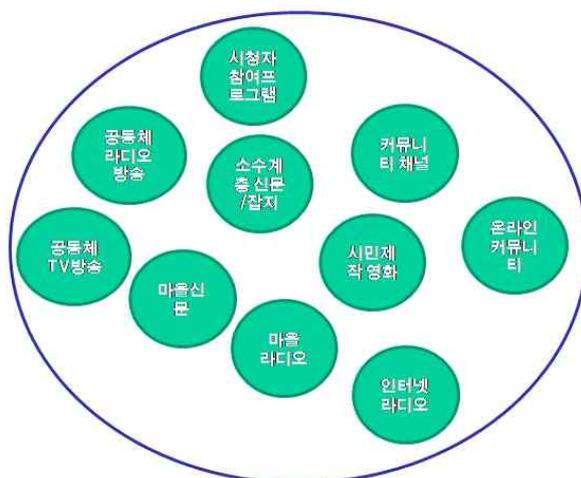


❖ 향후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대의적 소통을 추구하는 미디어가 아닌, 시민들 주체의 일상적, 참여적, 연대적인 미디어가 필요

P2

2. 공동체미디어의 의의와 필요성

2-1. 공동체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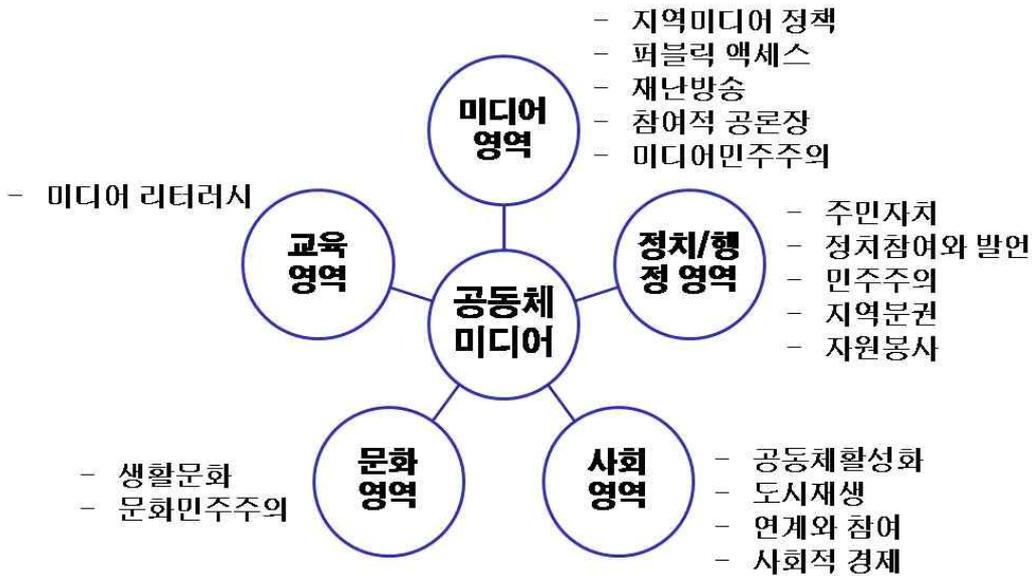
- ❖ 비영리, 공동체 소유,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징을 가진
- ❖ 다양한 활동과 매체 유형의
- ❖ 제 3영역의 사회적 미디어

공동체미디어가 수행하는 사회적 역할과 목적이 중요

P3

2. 공동체미디어의 의의와 필요성

2-2. 공동체미디어의 필요성



P4

2. 공동체미디어의 의의와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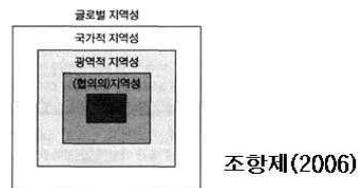
2-2. 공동체미디어의 필요성_미디어 정책적 측면

❖ 지역성의 변화와 지역성의 다층성

① 지역은 사회적 공간
: 사회적 지역성(참여와 연계 중요)

② 지역은 다층적 구조를 지님
: 지역은 가장 작은 공간인 가정 부터 가장 큰
글로벌에 이르는 동심원을 취함. 커뮤니케이션의
발달로 그 사이가 압축(조항제, 2006)

: 지역성에 대한 인식은 다층적임. 지역성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인식됨(Ofcom, 2006, 2009)



③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 하이퍼로컬 영역의 중요

P5

3. 공동체미디어 정책 관련 경과와 현황

구분	경과	법제현황
공동체라디오	2004년 시범사업(8개) 2009년 정규사업화(7개)	방송법(2006년) 공동체라디오발전법 발의(노동래의원실)
마을미디어	2012년 서울시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이후 전국 확산	중앙정부차원 법제 없음 전북/제주 마을공동체미디어지원조례 제정 (2016.12)
미디어센터	2002년 영화진흥위원회 미디어센터 설립 2017년 현재 문화부/방통위 등 전국 43개 미디어센터 운영 중	지역문화진흥법 상 지역미디어센터 근거(고시) 방송법상 시청자미디어센터 근거 지역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미디어교육	80년대 수용자운동 형태 출발. 2000년대 미디어센터 설립 이후 다양한 미디어교육 추진	미디어교육진흥법안 발의 되었으나 제정되지 못함(2007년, 2012년, 2013년)
퍼블릭액세스	2000년 방송법 개정으로 제도화	방송법 규정 시청자참여프로그램발전법 발의 된적 있음

P6

3. 공동체미디어 정책 관련 경과와 현황

공동체미디어와 관련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증가 하였으나
관련 정책, 규제, 법률 그리고 정책당국의 인식은
 여전히 공동체미디어의 활성화와 발전의 장애물로 작동하고 있음

P7

4. 공동체미디어 정책 전면 개편방안

4-1. 공동체미디어 정책 개편 방향

- ①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막는 적폐청산 전체 또는 병행
- ② 국가 차원의 명확한 정책 체계 수립
- ③ 지역자치 / 자치분권 지향
- ④ 전국적 중간지원기관 역할 재정립
- ⑤ 공동체미디어는 공공적 서비스이며 제3영역

P8

4. 공동체미디어 정책 전면 개편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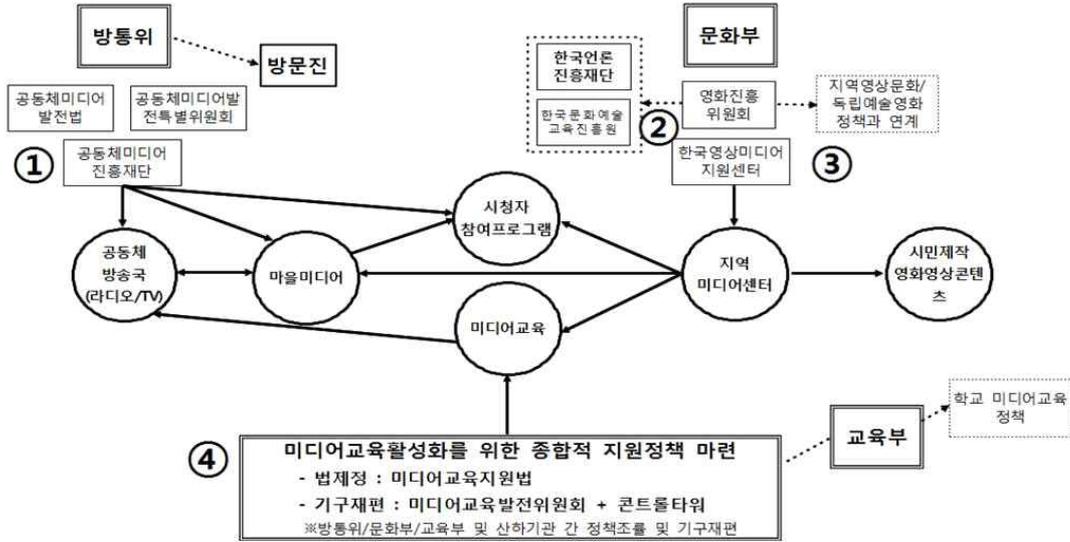
4-2. 전면적 개편 방향 _ 공동체미디어 정책 개편

- ① 공공서비스 모델
; 공동체미디어를 공공서비스 모델로 인정
- ② 생활세계 차원의 미디어를 포함한 다층적 미디어 정책
; 지역성의 다층성을 반영한 미디어 정책 수립
- ③ 공동체미디어 지원 영역 확장(플랫폼 + 다양한 활동)
; 다양한 영역의 정부 정책과 연계 될 수 있도록, 공동체미디어 플랫폼 지원과 더불어 공동체미디어 활동을 지원

P9

4. 공동체미디어 정책 전면 개편방안

4-3. 전면적 개편 방향 _ 중앙정부 부처 개편



❖ 공동체라디오방송국/지역미디어센터/미디어교육의 정책체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체계 전반을 정비

P10

4. 공동체미디어 정책 전면 개편방안

4-3. 전면적 개편 방향 _ 중앙정부 부처 개편

①은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전면 재구성을 전제.

②는 영화진흥위원회(한국영상미디어센터)와 같은 중앙정부 산하지원기관은 여타 유관한 산하지원기관과 소통/협력/소율을 통해 종합적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명확한 역할로 부여해야 함.

③은 문화부가 지역미디어센터의 정책의 주무부처가 되고,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광역형미디어센터로 위상을 명확히 전환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함. 법제정비 필요여부 검토.

④는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영화진흥위원회,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미디어교육관련 지원기능을 조정/소율하여 재편하는 것임.
 - '미디어교육진흥위원회 + 미디어교육지원법 + 미디어교육진흥원 + 미디어교육진흥협회'의 구도로의 재편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이 경우 시청자미디어재단은 공동체미디어진흥재단으로 전환하고 신설될 미디어교육진흥원은 공동체미디어재단/한국언론진흥재단/영화진흥위원회/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의 미디어교육관련 정책/사업의 가이드를 제시하고 연계/소율하는 역할을 하게 할 수 있음.
 - 최근 출범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 등 민간차원의 폭넓은 논의를 통해 방안 마련 필요.

P11

4. 공동체미디어 정책 전면 개편방안

4-3. 전면적 개편 방향 _ 정책/지원 전달체계 확립 방안

③은 마을/공동체미디어정책과 지역방송(지상파/케이블)/지역언론 정책과의 연계가 필요함을 제기한 것임.

- 지역MBC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이 지역KBS 및 민방으로 확산/의무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법개정 내용이 방송관련 법개정 시 고려되어야 함.
- 또한 최근 티브로드와 지역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간 협력으로 마을방송을 제작/송출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며 이와 같은 사례가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유료방송관련 정책재편 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지역신문과 마을공동체미디어 간 연계는 영국의 하이퍼로컬미디어 지원정책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④는 한 때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던 MBC시청자미디어센터의 열악함을 강조하기 위함임

- 방문진의 재구성 및 역할정립과정에서 MBC시청자미디어센터에 대한 지원정책 강화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⑤는 학교 내에서 미디어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지원체계와 정책수립을 위한 교육부처와의 연계가 필요함을 제기한 것임

P14

4. 공동체미디어 정책 전면 개편방안

4-4. 전면적 개편 방향 _ 법제정비방안

	1안	2안	비고
방송법	공동체방송을 공공서비스방송으로 포함 공동체방송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	공동체방송에 대한 공적 지원 규정 신설	
공동체라디오 방송	공동체미디어발전법 제정	공동체라디오방송발전(특별)법 제정	- 방송통신발전법 등에 공동체미디어/마을미디어 등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지원의무 명시
마을미디어	공동체미디어발전법에 마을미디어에 대한 지원을 포함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저변 확산을 위한 마을미디어지원을 공동체라디오방송발전특별법에 포함	- 마을공동체미디어지원에 대한 조례제정
미디어교육	미디어교육기본법과 미디어교육지원법 제정	미디어교육기본법 제정 및 관련법 개정 을 통한 체계수립	지역자치/교육자치와 관련한 내용의 포함방안 마련 필요

P15

4. 공동체미디어 정책 전면 개편방안

4-4. 전면적 개편 방향 _ 법제정비방안

	1안	2안	비고
지역미디어센터	지역미디어센터 활성화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마련 : 문화기본법에 민주적 소통에 대한 개념을 포함하는 법개정 : 지역문화진흥법 상 생활문화시설에 지역미디어센터를 포함하는 법개정 : 지역영상문화 지원정책영역의 강화/제거를 포함한 영비법 전면 개정 : 정책연계조정을 위한 방송관련법 정비	지역미디어센터지원 관련 별도법 제정	지역미디어센터 관련 표준조례안 마련 필요
시청자참여 프로그램	- 모든 지상파방송에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편성력대) 및 지원 의무화 조항 추가 - 케이블방송 및 iptv 등 유료방송에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 및 지원 의무화 조항 추가		
기타	- 자치분권을 위한 법제비(개정 포함) - 표현의 자유의 강화를 위한 법제비 - 행정혁신 및 거버넌스(협치)를 위한 법제비 - 마을공동체관련법에 소동/미디어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법제비		

P16

5. 나가며

- ✓ 공동체미디어는 변화되어져 가는 시대적 환경, 특히 촛불광장 이후 한국사회에서 요구되어지는 우리 사회의 전면적 재편을 위한 토대가 됨.
- ✓ 공동체미디어는 한국의 민주주의의 심화, 자치분권, 미디어민주주의, 커뮤니케이션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데 가장 적합한 기제가 됨.
- ✓ 따라서 공동체미디어와 이를 기반으로 한 활동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전환과 재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P17

참고자료

1.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안
2. 전라북도 마을공동체미디어지원조례
3. 제주 마을공동체미디어지원조례
4. 서울시 성북구 창조문화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 마을공동체미디어기본법안
6. 충남영상문화발전네트워크 사례
7. 전국 마을미디어 활동현황
8. 세미나 공동주최 단체 현황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678
----------	------

발의연월일 : 2016. 12. 28.
 발 의 자 : 노웅래 · 장정숙 · 조승래
 박선숙 · 김정우 · 강창일
 주승용 · 김민기 · 최명길
 박광은 의원 (10인)

제안이유

공동체라디오방송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처음 8개로 출발한 공동체라디오는 7개로 축소된 상황이며, 단지 공동체라디오라는 용어가 「방송법」에 추가된 것 외에는 변화된 게 거의 없는 상황으로,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청사진이나 국가차원의 지원이 없어 왔음.

세계적으로 보면 공동체라디오는 기존 방송의 영역이 아닌 제3의 미디어로 자리잡고 있고, 풀뿌리 민주주의와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실현하는 새로운 방송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애초 도입 취지를 살려 공동체라디오가 지방자치의 발전이나 지역공동체 형성, 미디어 소외계층에 대한 방송접근권 허용 등에 기여하고, 공동체라디오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공동체라디오방송”을 지리, 사회, 문화, 경제적 공통성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가 일정지역의 청취자와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이하로 하는 라디오방송으로 정의함(안 제2조).
- 나.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허가, 심사기준, 재허가, 소유금지, 겸영금지 등 사업허가와 관련된 절차를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 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사업운영 및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기준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 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지역 공동체와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행위를 규정함(안 제21조).
- 마. 공동체라디오방송에 대한 방송심의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안 제23조).
- 바. 공동체라디오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 공동체와 청취자의 방송 참여 요구 부응 및 방송소외계층의 방송 참여 확대를 위하여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육성과 활성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 미디어 다양성 증진, 미디어 민주주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체라디오방송”이란 지리, 사회, 문화, 경제적 공통성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가 일정지역의 청취자와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안테나 공급전력 10와트 이하로 하는 라디오방송을 말한다.
2. “사회적 목적”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공동체 중심의 방송 운영과 참여 실현
 - 나. 미디어 교육과 훈련의 제공
 - 다. 지역 공동체 문화 발굴 및 문화 다양성 실현
 - 라. 방송소외계층을 위한 방송서비스 제공
 - 마. 지역 공공서비스 전달 및 주민자치 활성화
3.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이란 공동체라디오방송을 위하여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사업자를 말한다.
 - 가.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 나. 공동체라디오시범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준비하거나 소규모의 공동체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제4조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공동체라디오방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사업의 허가

제4조(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 등) ①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허가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사업계획서
3. 시설설치계획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허가 신청은 방송권역별로 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부터 90일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전과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공동체라디오시범방송사업자는 접수일부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동체라디오시범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공동체라디오시범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가용 주파수 범위 내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한다.

⑦ 그 밖에 허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심사기준)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방송하고자 하는 지역공동체에서 해당 지역을 위하여 활동하였다는 증명을 포함하여 지역발전의 기여가능성
2.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사회적 목적 실현 및 시민참여 활동의 증진을 포함하여 공익성 실현 가능성
3. 지역공동체 각종 기관 및 단체와의 제작 협력계획을 포함하여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 계획의 적절성
4.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5. 경영 및 편성에 있어서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6. 주민제작자들의 운영계획을 포함하여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7. 기부후원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여 재정적 능력
8.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에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의 유효기간)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공동체라디오시범방송사업자는 1년으로 한다.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청자 권익 보호, 공적책임 실현, 공정성 및 공익성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7조(재허가 등) ①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재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
2.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3. 제23조제1항에 따른 방송평가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4. 제2조제2호의 사회적 목적 실현 정도
5.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6. 그 밖에 허가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재허가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방송품질 유지와 수신자 보호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 및 시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소유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정부와 그 출연기관 또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기관 또는 법인
3. 종교단체
4. 정당
5. 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영위하려는 자

제9조(겸영금지)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1개를 초과하여 방송국을 소유할 수 없다.

제10조(공동체라디오방송국의 개설조건) ①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은 초단파방송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허가받은 방송구역 일원을 포함하는 공중선전력으로 할 것. 이 경우 해당 공중선전력은 해당 전파관리소의 현지검사를 거쳐 설정할 것. 이 경우 공중선전력은 최대 10와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송신공중선의 높이와 지향특성은 방송구역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그 밖에 주파수대역 및 안테나 높이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공복리의 증진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방송구역) ① 공동체라디오방송국별 방송구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적어도 1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일원
 2. 공동체라디오시범방송사업자: 1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일부
- ② 방송국별 방송구역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등의 구별에 따라 지도에 이를 표시하고, 그 구역 내의 총 가구 수·방송청취예상 세대 수 등 방송청취예상자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방송구역의 세부적인 표시방법과 작성요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④ 방송국의 허가를 받은 자는 방송국 운용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방송구역 전계강도 실측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무선국 등의 검사수수료)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등의 준공검사·정기검사 및 임시검사의 해당 수수료를 5분의 1 감면한다.

제13조(무선종사자의 배치)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은 제한무선통신사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제3장 사업의 운영 및 방송프로그램 편성

제14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때 공정성·공공성·다양성·균형성·사실성 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매일 6시간 이상 방송을 실시하되, 해당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을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5조(방송사업의 운영) ①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충당한다.

1. 기부금
2.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3. 「방송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의 수입금
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5. 「방송법」 제74조에 따른 협찬고지 수입금
6. 그 밖의 수입금

- ② 공동체라디오사업자는 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제1항제3호에 따른 방송광고의 수입금 중 한 가지가 전체 수입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방송광고)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제17조(협찬고지) ①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협찬고지를 할 수 있다.

- ②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재난방송) ①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을 할 수 있다.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를 방송허가구역 시·군·구의 지역재난방송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난방송에 대한 협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재난방송사로 지정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재난방송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재난방송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방송내용의 기록 보존)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방송된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방송 후 6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재송신)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다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재송신할 수 있다.

제21조(금지행위) ①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지역 공동체와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방송국의 지위를 이용하여 지역 사회에서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청자의 방송참여 접근을 거부·중단·제한하는 행위
 3. 방송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 제작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등이 금지행위를 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금지행위의 중지,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등이 금지행위를 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상파방송사업의 부과기준의 10분의 1 이하를 적용한다.
 - ⑤ 금지행위를 한 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⑥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시청자 권익보호

제22조(시청자 권익보호) ① 국가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발전과 지역 시청자의 방송 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을 위하여 법제, 기금 등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공동체라디오방송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문화적 소외계층의 방송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방송심의) ①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자체심의 의무를 면제하고, 방송권역 청취자가 참여하는 방송평가회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심의에 관한 사항은 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자율성, 독립성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시청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송은 개인의 사생활이나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방송은 성별, 연령, 직업, 종교, 신념, 계층, 지역, 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3. 방송은 정당, 종교, 소수계층, 여성, 어린이 등을 공격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방송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방송은 성별간·세대간·계층간·인종간·종교간 차별과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방송은 성(性)표현, 폭력묘사, 충격, 혐오감, 범죄 등의 묘사에 주의하여야 하고 비과학적인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동체라디오시범방송사업자는 자체심의 의무를 면제한다.

제24조(공동체라디오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공동체라디오방송의 발전과 공동체라디오방송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 및 주파수 확보 등 기술적인 지원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공동체라디오방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5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한 1인으로 한다.
- ③ 위원은 지역 공동체의 발전과 공동체라디오방송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공동체라디오방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공동체라디오방송의 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운영 및 제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에 결원이 있는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결원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체라디오방송을 대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를 고시할 수 있으며, 공동체라디오방송대표단체는 공동체라디오방송발전위원회 위원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동체라디오방송 발전지원계획의 수립 및 관련 정책 자문
 2. 공동체라디오방송의 발전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의 평가
 3. 공동체라디오방송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조사
 4.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야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2016-12-30 조례 제 436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마을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적절한 육성·지원을 통하여 도민의 민주적 의사소통 창구역할과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공동체미디어”란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과 미디어 문화 활성화를 위해 활용하는 온·오프라인상의 영상·음성·인쇄 매체 등의 콘텐츠를 총칭한다.
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이란 주민참여를 통한 미디어 관련 교육, 제작, 비영리 목적을 하는 유통 및 배급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란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주체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토대로 하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을공동체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2. 주민들은 자발적인 참여와 정치적인 중립을 견지하여야 하며, 미디어가 갖는 공익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의 활성화와 공익성이 인정되는 비영리 목적의 우수한 콘텐츠의 확산·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언론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전라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미디어 활용 능력 제고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지원의 기본방향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지원 규모
3.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의 미디어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① 도지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연도별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 홍보, 연구, 조사 사업 및 시범적으로 운영이 필요한 사업
3.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와 관련된 단체·기관의 지원 사업

② 도지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을 수행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 실습, 매체 제작, 발표 등의 활동
2. 미디어 운영 및 관련 콘텐츠 제작
3.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지원을 위해 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개발·기획 및 조정
2.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한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미디어 관련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행정부지사, 마을만들기 담당 과장, 미디어 관련 담당 과장
2. 위촉직 : 도의회 의원, 관련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또는 유관기관 관계자 등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사업비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된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1.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2. 법령이나 조례 및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제11조(준용)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2016-12-30 조례 제 176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을 위하여 생활문화 활성화와 지역 콘텐츠 개발 및 육성, 미디어분야 기초인력 양성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공동체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영상, 음성, 인쇄, 온라인 신문, 방송 등을 말한다.
2. “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이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제작·발표·운영·유통·보급 및 이를 위한 교육 및 모임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 지원 및 협력 방안
3.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 지원) 도지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미디어 장비 구축 및 운용
2. 마을공동체미디어 콘텐츠제작 지원

3.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인력 양성 및 교육
4. 마을공동체미디어 교류협력
5. 마을공동체미디어 홍보 지원

제6조(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2.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개발·기획 및 조정
3. 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도청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각계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분야 전문가 2명
2. 마을공동체 및 마을미디어 활동가 3명
3. 지역 언론 또는 공동체미디어 관련 시민단체 2명
4. 의회에서 추천하는 주민 2명

④ 임명 또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 체제 구축) 도지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언론기관 등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시 성북구 창조문화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5.12.31 조례 제109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기본법」,「지역문화진흥법」,「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문화예술정책의 체계적 수립과 창조도시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창조문화도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이 마을민주주의의 발전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지역경제, 미디어, 여가 등 사회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창조문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그 역할을 다하며, 문화의 다양성,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과 일상 속에 스며드는 생활예술이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창조문화도시”란 도시의 미래발전에 있어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중시하고, 문화예술의 창조적 자원과 주체가 공동체문화, 생태문화, 역사문화, 일상문화, 사회적 경제발전에 기여하여 마을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모두가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문화도시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의 문화정책 수립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 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영향평가,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구민의 문화예술 향수와 여가활동,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문화유산 및 역사문화 보호와 활용 및 가치창조에 관한 사항

5. 문화적 도시환경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6. 구민예술교육 활성화 및 생활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7. 성북 마을미디어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창조문화예술 진흥발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위원 중에서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 의원 2명
2. 문화정책, 예술교육, 건축행정, 축제기획, 생활예술·체육 등 분야별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별 분과위원장을 각각 두며,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기본진흥계획 수립, 문화영향평가 등
2.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다문화 및 이주민 문제 대안 예술문화, 문화다양성 가치확대, 고령화·노인·청소년 등 세대별 문화다양성 분야
3. 역사문화, 교육, 자연생태, 전통시장 등 역사적 가치, 사회적 기업과 문화예술과의 협조체계 등
4. 생활창작, 문화예술교육, 주민문화 등 구민의 아마추어 생활예술 실태파악 및 활성화 지원, 일상창작, 문화예술마을축제, 마을미디어, 도서관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한다.

③ 문화정책 성과 및 향후 발전계획 위원회 포럼을 개최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체육과장, 서기는 문화관광담당주사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운영지원) 구청장은 문화예술기본진흥계획 수립 및 창조문화도시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지표개발 및 공론화 등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796
----------	------

발의연월일 : 2017. 2. 24.
 발 의 자 : 진선미·김정우·최경환(국)
 김수민·정성호·오제세
 민병두·강병원·안규백
 김철민·유은혜·서영교
 송옥주·박홍근 의원
 (14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급속한 압축 성장 과정에서 농촌은 젊은 사람의 도시 유출로 인구가 감소되고 도시는 과밀화로 익명의 공간으로 변화됨으로써 우리 민족의 전통인 공동체 정신이 상실되고 있음.

그동안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나 사업 추진의 주체가 주민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하향식으로 추진되었고, 사업의 지원방식에 있어 물질적·경제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는 한계가

있었음.

최근 현대적 의미의 공동체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주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 및 체계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주민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여 주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마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 자율적인 해결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공동체의 신뢰 증진을 통하여 주민자치 구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마을공동체는 모든 주민에게 개방되고, 다양성·자율성·독립성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지며, 주민의 전체 이익에 기여하고, 주민 및 다른 마을공동체와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의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2조).
- 다. 마을공동체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5년마다 지역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 근거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주민들의 학습과 역량강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마.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 소속으로 각각 마을공동체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마을공동체중앙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계획 수립의 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지역 지원센터를, 행정자치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마을공

동체중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사. 행정자치부장관은 마을과 마을공동체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마을만들기 활동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마을공동체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8조).

아. 마을공동체는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체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마을공동체기금의 운용 등을 위하여 마을공동체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자. 마을과 마을공동체는 다른 마을과 마을공동체 사이의 상호협력과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마을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공동체가 마을만들기를 위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마을공동체에 우선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대여·사용하게 할 수 있고, 그 부동산 자산의 소유권은 부기등기하도록 함(안 제2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선미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95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마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 자율적인 해결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공동체의 신뢰 증진을 통하여 주민자치 구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은 오랜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형성된 장소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민주주의를 훈련하는 장소이다.
2. 마을 간에는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마을만들기는 주민이 주도하고 책임을 중시하는 주민자치 활동으로 한다.
3. 마을공동체는 모든 주민에게 개방되고, 다양성·자율성·독립성을 갖는다.
4. 마을공동체는 주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고, 주민 및 다른 마을공동체와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의 번영을 추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적·심리적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통·리나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2. “주민”이란 마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거주민이나, 마을에 소재한 사업장·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회사원·상인·학생 등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고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마을 주민이 구성하는 다양한 모임, 단체 또는 법인 등의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만들기”란 주민과 마을공동체가 주도하여 마을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발전시키고,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가 당면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거나 마을 발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마을 및 마을공동체에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6. “마을공동체기업”이란 주민과 마을공동체가 해당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

여 마을 발전을 위해 설립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4조(마을공동체 등의 책무) ① 마을공동체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자치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 주체임을 인식한다.

② 마을공동체는 주민의 주도와 참여를 기반으로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주민자치의 구현에 노력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마을공동체·마을공동체기업은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공동체의 역사적 전통과 문화적 다양성, 주민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공동체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발전을 위하여 각종 지원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추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공동체·마을공동체기업과 협의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마을공동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마을발전계획 및 지원사업

제7조(마을발전계획의 수립) ① 마을공동체는 마을을 발전시키기 위해 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마을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마을공동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마을발전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역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5년마다 시·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시·군·구계획 및 시·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마을 및 마을공동체의 기본 현황과 여건 분석
 - 2.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
 - 3. 다양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연계·협력 방안
 - 4.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민관협력의 추진체계
 - 5.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
- ④ 시·군·구계획은 제7조에 따라 마을공동체가 수립한 마을발전계획을 반영하고, 시·도계획은 시·군·구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⑤ 지역계획은 제13조에 따른 마을공동체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⑥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에 근거하여 시·군·구 연도별 시행계획 및 시·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⑦ 그 밖에 지역계획·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 2.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 3.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 4.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및 시책사업
 - 5.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인력 양성 방안
 -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기본계획은 지역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하고, 제14조에 따른 마을공동체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소관사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 근거하여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공동체의 사업비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와 운영비의 지원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① 마을공동체는 지역사회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함께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 및 역량강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마을공동체의 역량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발굴·지원 및 단계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마을공동체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을만들기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도자와 활동가(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
2. 전문인력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3. 전문인력의 지역 협의체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양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장 마을공동체 정책의 추진체계

제13조(마을공동체지역위원회) ①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 소속으로 각각 마을공동체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변경
2.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연계와 협력방안
3. 마을공동체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마을공동체지역지원센터의 운영

5.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4조(마을공동체중앙위원회) ①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마을공동체중앙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2.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사업의 협의·조정

3. 마을공동체 전문인력 양성 정책의 수립·조정

4. 제17조에 따른 마을공동체중앙지원센터의 운영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6.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전담부서의 설치) ① 행정자치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양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총괄·조정하고 기본계획·지역계획의 수립·변경, 중앙위원회·지역위원회의 개최 등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및 조례로 정한다.

제16조(마을공동체지역지원센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지역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지역계획 수립의 지원

2. 마을공동체 기초조사와 지원사업 분석

3. 마을발전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문

4. 마을공동체 간 협의회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5. 마을공동체기업 생산제품의 판매, 디자인 등 지원

6. 주민, 전문인력, 공무원 등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발굴과 운영

7. 마을공동체 간의 정보 공유

8.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지원센터의 운영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지역지원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지역지원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7조(마을공동체중앙지원센터)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2.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평가에 필요한 지원
 3.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및 분석
 4. 전문인력, 공무원 등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5. 마을공동체 관련 정보의 수집·가공 및 제공
 6. 지역지원센터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7. 마을공동체 운영 등의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8.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지원센터의 운영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중앙지원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중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

제18조(마을공동체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마을과 마을공동체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마을만들기 활동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마을공동체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마을공동체기금) ① 마을공동체는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체기금(이하 “마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마을기금은 제20조에 따른 마을공동체재단이 관리·운용한다.

③ 마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0조에 따른 마을공동체재단의 전입금
2. 마을공동체기업의 수익금
3. 마을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④ 마을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마을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지원
2. 마을발전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
3. 지역지원센터에 대한 경비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을기금의 운용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마을기금의 설치·운용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마을공동체재단) ① 마을공동체는 지역의 다양한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체재단(이하 “마을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 ② 마을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 ③ 마을재단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마을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마을기금의 설치·운용
 2.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접수
 3.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한 사업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재단의 설립을 위하여 출연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마을재단의 설립·운영, 지원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마을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마을상생협약) ① 마을과 마을공동체는 다른 마을과 마을공동체 사이의 상호협력과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마을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마을상생협약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2조(마을공동체의 국유·공유 재산 활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공동체가 마을만들기를 위하여 국유·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마을공동체에 우선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대여·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② 마을공동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조성하거나 취득한 부동산 자산의 소유권 등기를 부기등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 행정자치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유·공유 재산 중에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국유·공유 재산과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부기등기의 방법·절차, 국유·공유 재산 등의 현황파악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3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마을공동체의 대표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마을공동체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중앙지원센터·지역지원센터·마을재단이 아닌 자는 마을공동체중앙지원센터·마을공동체지역지원센터·마을공동체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6조 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26조(과태료)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마을공동체중앙지원센터·마을공동체지역지원센터·마을공동체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남 영상문화시설 운영 협의체 구성·운영계획

- ◆ 작은 영화관, 영상미디어센터 등 영상문화시설 관계자 네트워크를 구축,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 ◆ 특화사업 발굴 등 도민영상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활동 전개

I 배경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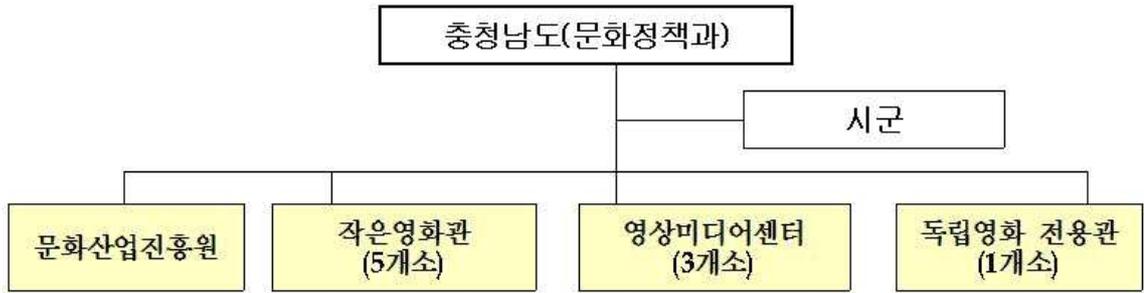
- 영상은 공간적으로 단절*된 현대인의 생활공동체 형성에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어 영상시설 구축중인 작은 영화관과 영상미디어센터의 활용방안 모색 필요
 - * 공간적 단절(이웃과 대면없이 이동) : 아파트숙식 ↔ 교통 ↔ 일터
- 작은 영화관(5개소), 영상미디어센터(3개소)의 시설 구축을 앞두고 시설 운영의 생산적 결과 도출하기 위해 시설운영주체와 도/시군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이슈화 운영 필요

II 구성·운영계획

■ 구성 개요

- 협의체명 : 충남 영상문화 네트워크(가칭)
- 참여인원 : 총32명(도3, 시군14, 진흥원2, 운영주체9, 전문가2)
 - 운영 : 년 2회 정기모임 개최, 필요시 추가 운영

○ 구성체계



■ 기관별 역할

구분(대상)	주요 역할	비고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총괄, 조정 • 협의회 회의소집 및 도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책 강구 등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 영화관, 영상미디어센터 현장 지도 감독 • 사업추진에 따른 정보제공 및 애로사항 건의 등 	
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체 행사 준비 및 영상산업 보조자료 제공 • 도, 시군과 사업운영 주체간 가교 역할 및 시설 운영지원 	
영상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체 참석 및 영상문화시설 운영계획 등 정보 공유 • 운영실태 및 사업실적 보고 등 	
전문가 (교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문화산업분야 자문 및 협의체 발전방안 제시 등 	

■ 협의체 주요의제(예시)

분야	의제	주요 내용
1. 핵심가치	우리 지역에서 영상문화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영상문화 향유의 비전 • 지역 영상문화의 정체성에 대하여
2. 휴먼웨어	영상문화 누가 만들어 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체계의 구성 및 운영 • 주체간 거버넌스 구축
3. 소프트웨어	지역의 현안과 사례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성에 따른 추진현안 토론 • 프로그램 성공과 실패를 중심으로
4. 하드웨어	지역에서 영상문화 향유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문화 공간구축의 실제적 방법론 • 지역의 영상문화 향유공간 운영방안
5. 머니웨어	사업예산의 효율적 활용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예산의 운용에 관한 공유 • 사업 추진예산의 행정적 정비

III 협의체 구성 사전모임

○ 때·곳 : 2017. 3. 29(수) 14:00~16:00 / 도청 문예회관 세미나실 107호

○ 참석 : 총 32명(도3, 시군14, 진흥원2, 운영주체9, 전문가2)

* 영상문화 관련 시설을 보유하고 있거나 조성계획 중인 시·군

• 작은영화관 : 서천군('15년), 예산군('17 예정), 금산군('17 예정), 태안군('17 예정), 청양군('17 예정)

• 영상미디어센터 : 천안시(독립영화관 포함), 서천군, 서산시('17 예정)

○ 시간계획

시간	소요	내용	비고
13:50~14:00		○ 등록	
14:00~14:30	30'	○ 개회 및 지역현황 소개(기관별)	
14:30~15:30	60'	○ 협의체 구성 관련 의제 토의	
15:30~16:00	30'	○ 향후 추진일정 및 운영방법 등 종합토론	

IV.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 협의회 발족식 개최 : '17. 4~5월 중
- 협의회 반기별 각 지역 순회 포럼 추진(2회) : '17. 6월, 10월
- 시군 : 협의회 구성 사전모임 참석자 명단(팀장, 담당자) 제출(3. 24까지)
- 진흥원 : 행사준비 및 작은영화관,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주체 참석 요청 등

시군명	부서명	직급	성명	연락처(핸드폰)	담당업무



전국 마을미디어 활동 현황



서울 (*2016년 서울시마을미디어지원센터 사업 참여단체 현황(총 65개 단체))

○ 거점형

#	자치구	단체/주민모임명	사업명
1	관악구	관악공동체라디오	마을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한 기술생태계 지원 및 콘텐츠 강화 지원사업
2	성북구	성북문화재단	동북4구(성북/강북/도봉/노원) 마을미디어 활성화

○ 교육형

#	자치구	단체/주민모임명	사업명
1	광진구	영상제작단 '눈사람'	영상으로 만나는 마을과 공동체. 배우고, 기록하다
2	구로구	천왕마을연합회	천왕 미디어와 소통하다
3	금천구	징검다리	GSB금천징검다리마을방송국
4	금천구	시흥3동 주민자치위원회복지분과	박미복지신문
5	도봉구	은행나무마을방송국	희망! 마을미디어를 알려라
6	서초구	미디어돌아봄	마을에서 미디어로 말걸기
7	서초구	서초생생마을기자단	서초생생 소셜미디어
8	양천구	양천마을미디어	양천 팟 만나는 사람들
9	영등포구	이주민방송	모두 함께!! 이주민라디오 동아리
10	용산구	청년의 이름으로	우리동네 VJ특공대
11	용산구	밥꽃영화마을	작은방 너머 영화세상
12	중랑구	중랑 마섬달	마을과 썸타는 달팽이

○ 복합형

#	자치구	단체/주민모임명	사업명
1	강남구	디지로마드의 모임	#(샷)마을이야기
2	강동구	행복한 사진동아리	마을로 간 행복한 사진동아리, 시즌 투
3	강북구	청춘바람	강북 청년 잡지 '청춘 앞으로뒤태 바람'
4	강서구	엠벨리나눔터 기획단	마곡마을신문 엠벨리나눔터
5	금천구	라디오금천	라디오 꽃피다
6	금천구	산아래 문화학교	마을담은잡지 '달口다'
7	노원구	영상을 좋아하는 다락방	우리동네 영다방 시즌2
8	노원구	노원공동체라디오 노원FM	기존회원 역량강화와 신규회원 확대로 지속가능한 노원FM 만들기
9	노원구	노원지역청소년 인권동아리 화야	노원지역 청소년 인권신문 <종이비행기> 제작단
10	동작구	동작하는 동작기자단	"청소기" - 청소년이 만드는 소통과 기똥찬 마을 이야기
11	마포구	엄마의 시간	엄마의 시간
12	성북구	밤골경로당 성북실버IT센터	성북 마을영상 제작
13	성북구	너른마당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 배움터	함께할모두를위한안내서
14	영등포구	한민족연합회	대림동의 국제방송_ '한중방송' 만들기

○ 매체형

#	자치구	단체/주민모임명	사업명
1	강북구	강북구공동체라디오	강북 FM, 마을을 엮다
2	강서구	강서올림미디어	강서 fm 강서구마을공동체라디오
3	구로구	구로공동체라디오 구로 FM	구로 FM, 구로에 말을 걸다
4	동작구	동작공동체라디오	동작공동체라디오, 조직의 단맛을 느끼다
5	마포구	마포공동체라디오	마포 청소년 라디오 습격사건 - 내가 만드는 라디오방송

6	서대문구	가재올라디오	서대문 마을미디어허브-[가재올라디오]
7	서대문구	한국배리어프리방송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대문영상해설뉴스
8	성동구	매거진오	매거진오
9	성동구	성동 FM 소풍	성동 FM 소풍마을라디오방송사업
10	성북구	성북마을방송 와보송	왁자지껄! 주민이야기! 더불어 사는 마을
11	성북구	성북동천	성북동 마을잡지 간행사업 4 차
12	성북구	사단법인 함께사는 성북마을문화학교	업그레이드 공감 소통 성북공동체라디오
13	용산구	종점수다방(용산 FM)	우리동네 마을라디오 용산 FM
14	용산구	남산골해방촌	남산골해방촌 10 호,11 호 만들기
15	은평구	은평시민신문협동조합	우리동네미디어를 부탁해
16	종로구	창신동라디오방송국 덤	덤,지평을 넓히다
17	중랑구	마을미디어뻬	마을 in 미디어, 미디어 in 마을

○ 아이템형

#	자치구	단체/주민모임명	사업명
1	강남구	문화예술연구소 다원	강남작당'톡톡'
2	강서구	동소동락 청아함	마곡네임즈
3	노원구	노원유쓰캐스트 NYCast	노원유쓰캐스트 NYCast
4	노원구	마들주민회 부설 마들창조학교	두근두근 스튜디오 2016 프로젝트 '이것이 우리의 일상-'
5	동대문구	ON 동네 방송국	[Magazine ㄷㄷㄱ] 프로젝트
6	동작구	상도동 그 청년	상도동 이야기 vol.2
7	마포구	끼다	참 좋은 마을미디어
8	영등포구	영등포마을넷	영등포 사람을 기억하다, 마을을 기록하다.
9	은평구	우마미-틴	너도 PD? 나도 PD?
10	중구	매거진 충무로	매거진 충무로

○ 지정공모

#	자치구	주민모임/단체명	사업명
1	강남구	일원마을넷	나눔공유축제 이야기
2	강동구	영상모임 영차(映cha)	아빠 엄마가 만드는 아파트 작은도서관
3	금천구	금천문화역사포럼	동네어르신에게 듣는 금천 옛이야기
4	도봉구	마을콘텐츠제작단 엠블	다큐, 문화를 담는 마을미디어
5	마포구	놀이터 알	알바를 위한 매거진 ‘놀이터 알’
6	성북구	성북, 무지개와 함께 마을잡지 편집위원회	성북구 성소수자-비성소수자 주민 갈등해소 및 교 류증진을 위한 주민공동체 마을잡지 간행 사업
7	송파구	송파마을예술창작소	Art N 다락
8	용산구	종점수다방 (용산FM)	굿바이! 용산화상경마장
9	은평구	작공청춘 팬클럽	작공 아이들, 텃밭에서 놀다!
10	종로구	창신동라디오방송국 덤	릴레이 DJ 나는 봉제인이다!

 부산

※ 부산마을미디어가이드북 (2015, 부산창조재단/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발행) 내 ‘한눈에 보는 부산 마을미디어’ 자료 발췌

#	분류	지역	매체명	주체
1	신문	해운대구	늘배움	
2	신문	동구	동구이바구 신문	
3	sns	반송동, 반여동	반반신문	
4	sns	부산	부산공감	
5	라디오	부평동	부평깡통시장 라디오방송국	
6	라디오	서동	서동미로시장 라디오	
7	라디오	수영동	수영팔도 라디오	
8	라디오	아미동	아미로 구구콘	
9	신문	해운대구	장산노인신문	

10	신문	주례3동	주례3동 소식지	
11	잡지	부산	지잡	
12	잡지	수영동	푸조와 곰솔	
13	영상	부산	참여tv	
14	책	해운대구	청사포에 해녀가 산다	
15	신문	학장동, 엄궁동	학마을풍경	
16	라디오	해운대구	해운대 상인 라디오	
17	신문	덕포동	한내마을 이야기	
18	신문	동구	꿈꾸는 해바라기	
19	신문	중구	실버투데이	
20	신문	서구, 사상구	부산청소년신문	
21	신문	사상구	학마을풍경	
22	신문	사상구	톡톡타임즈	사상구장애인복지관 내 주민조직 아름다운모라동을사랑하는사람들
23	신문	사상구	아모사 (아름다운 모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사상구장애인복지관 내 주민조직 아름다운 모라동을사랑하는사람들
24	신문	부산진구	백양마을신문	백양산 골프장저지→ 백양마을학교
25	신문	북구	대천마을신문	대천마을학교
26	신문	북구	대추나무골	만덕주민공동체
27	신문	사하구	감천문화마을신문	감천문화마을협의회
28	신문	사하구	구덕골 호호신문	동대신3동 주민자치위원회
29	신문	해운대구	늘배움	해운대평생학습늘배움터
30	신문	해운대구	반송사람들	반송희망세상
31	신문	해운대구	반여마을	(사)부산여성회 해운대지부
32	신문	금정구	금샘마을	금샘마을공동체
33	신문	금정구	니우스금정	금정구민주단체협의회
34	신문	금정구	미리내 까치신문	장전1동주민센터 기획 → 미리내 까치마을 신문편집위원회로 이관

35	신문	동래구	쇠미골 소리샘	쇠미골소리샘 주민기자+사직종합사회복지관
36	신문	연제구	우거지(우리마을 거제리 지금모습)	(사)부산여성회 거제지부
37	잡지	해운대구	청년보통씨	반송 카페나무 + 미디토리협동조합
38	잡지	수영구	안녕 광안리	개인
39	웹진	부산	바짝	개인
40	웹진	해운대구	반반신문	반송 카페나무
41	웹진	금정구	노블레스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42	팟캐스트	부산	인디라	인디게임개발자모임
43	팟캐스트	부산	잡식가를위한수다	개인
44	팟캐스트	부산	여성공감 토크톡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
45	팟캐스트	부산	부산의 달콤한 라디오	개인
46	팟캐스트	부산	듣보잡 불량식품	개인
47	팟캐스트	부산	개허세매뉴얼	개인
48	팟캐스트	부산	베트남목소리	미디토리협동조합
49	라디오	중구	온에어	중구노인복지관
50	라디오	금정구	미로시장 보이는 라디오 방송국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단
51	라디오	영도구	영가비 실버라디오	영도구노인복지관

지역현황

* 2015년 제4회 서울시 마을미디어축제 중 ‘[포럼] 변화를 만드는 마을미디어’ 자료집의 발제문 ‘2015년 마을미디어의 좌표, 확산과 네트워킹을 위한 과제(허경/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의 자료를 보완한 현황임.

#	지역	명칭	내용	비고
1	제주	외도동 마을미디어 제작단	- 제주영상미디어센터 마을미디어 시범사업 - 외도동 마을미디어 추진위원회와 진행 중 - 외도동 마을라디오방송국 설립 예정	

2		마을방송국 제주살래	- 서귀포귀농귀촌협동조합이 2년 간 준비하여 '15년 12월 개국 예정	
3		저지리 마을공동체 방송국	- 저지리 문화활동가, 사회활동가들이 추진 중	
4		느영나영 방송국	-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의 상인 라디오방송국 - 매주 월·수·금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상인들의 다양한 사연, 음악과 더불어 지역 문화와 여행 등의 소식	
5		와들랑라디오	- 제주 구좌읍	
6	전남 순천	순천만FM	-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당시 미니FM 사업으로 시작하여, 현재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 지원으로 지속적인 라디오(팟캐스트) 제작	
7	전남 해남	해남FM	- '해남우리신문'에서 팟캐스트 제작을 위한 교육 추진 중	
8	광주 광역시	광주마을미디어 네트워크 추진위원회	- 광주지역마을미디어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추진 중('15년 6월)	
9		우리동네방송국 지원센터 '말민'	- 광주지역 마을미디어 지원을 위해 지역 내 문화/미디어 활동가들이 구성 - 향후 전망 수립 중	
10	광주 광산구	도래샘ing 라디오방송국	- 광산구 '오순도순 광산형 아파트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추진 - 광산구 첨단2동 부영1차아파트 '도래샘 작은도서관'내 설치	
11		수완라디오 '소나기'	- 광산구청 지원을 통한 교육 완료	'말민' 연계
12		신창 '꿈꾸는 라디오'	- 광산구청 지원을 통한 교육 완료	'말민' 연계
13		더불어락라디오	- 더불어락 노인복지관	'말민' 연계
14		고려FM		
15	광주 동구	동적골FM	-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교육 완료	
16		푸른길FM	-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교육 완료	
17		달달동구FM	-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교육 완료	
18		대인시장 행복라디오방송국	- 광주대인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의 사업으로 추진	
19	광주 북구	북구 마을라디오	-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와 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협력	
20		삼정승고을 희망메아리	-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주공2단지 지역주민	

			<p>들이 직접 만드는 방송 '삼정승고을 희망 메아리'방송은 지역주민들에게 사회복지 정보, 생활의 정보, 지역주민들의 사연 및 신청곡으로 꾸며짐.</p> <p>- 매주 월요일 오후4시 송출(팟캐스트)</p>	
21	광주 남구	진다리마을방송		
22	경남 창원	마을방송창원TV	<p>- (사) 지역문화공동체 경남정보사회연구소에서 추진하는마을방송 창원TV는 풀뿌리 지역주민운동과 IPTV 방송과의 결합을 통한 풀뿌리주민참여형 방송국</p> <p>- 올레TV(IPTV) 789, 내고향TV 창원지역 채널로 송출</p> <p>- 마을미디어창원협동조합 설립</p>	
23	경남 김해	와글와글 시장라디오	<p>- 동상 전통시장 라디오방송국</p> <p>- 방송국 운영은 김해지역의 문화 활동가 "창의문화만들기" 회원들이 진행</p>	
24	대구 광역시		<p>- 대구광역시 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p> <p>- 대구 수성구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업에 마을미디어 제작 포함 (마을공동체 기반을 만들기 위한 '마을스토리 발굴 및 스토리북 제작' '주민 리더 및 활동가 양성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미디어 제작·마을 축제 개최 등으로 주민 결속력 강화도 모색)</p> <p>- 구체적인 추진내용 확인 필요</p>	
25	대구 수성구	수성주민광장	<p>- 2008년 6월 성서FM 공동체텔레비 방송을 시작으로, 2011년 1월 개국한 지역밀착형 인터넷 방송</p> <p>- 2014년 2월 팟캐스트 시작(성서FM을 통해 재전송)</p>	
26	울산 북구	울산 꿈꾸라	- 울산 북구 농소3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하는 마을공동체라디오방송(팟캐스트)	
27		마실터	<p>- 울산 북구 농소3동 마을신문</p> <p>- 농소 3동 주민자치위원회 소속 20여 명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해 제</p>	
28	대전 광역시	대전 대덕라디오	- 지역공동체 마을미디어인 대덕라디오는 유통채널로 인터넷을 활용하는, 이른바 '인터넷방송'이다.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미디어제작교육을 받고 라디오제작단으로 활동하는 시민들이 모여 만든 대전의 첫 마을미디어	
29		석교마을미디어지원센터	- 석교마을신문에서 운영	
30	충북 제천	제천시민TV 봄	- 제천영상미디어센터에서 지원하는 영상/라디오 등 제작단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31	충북 청주	청주마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권 마을신문네트워크 지향 - 동단위 마을신문을 인큐베이팅하며 직영 또는 지원할 예정 - '15년 2월 협동조합언론 오창마실 창간 	
32	충남 서천	서천F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디오서천 1919/떴다! 의소대/1318 라디오는 내친구/옆집아저씨 100철수의 음악텐트/도깨비수다 팡팡! /원더강순이/서민라디오/Cine in 서천/별헤는 밤/한밭회 이들이 사는 이야기 등 서천군미디어문화센터의 지원을 통해 제작되는 라디오방송 	
33	충남 공주	소리마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주 산성시장의 라디오방송국 - 12년 12월 개국 	
34	충남 서산	동부전통시장 라디오방송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상인회관 2층 20㎡ 규모의 라디오 방송국을 개국 - 방송은 주1회 운영되며 유행가나 클래식 등의 음악과 상인들의 일상, 손님들의 이야기, 시장 소식 등을 다룬다. - 방송을 진행하는 DJ는 상인 6명과 시민 1명 등 7명 	
35		덕진노인방송 D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시민미디어센터와 덕진노인복지관이 협력하여 2010년 개국 	전북지역은 9개 마을신문, 4개의 마을라디오 운영 중 ('15년 전북공동체미디어TF의 설문조사 응답 기준)
36		전주 시민라디오제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부터 전주시민미디어센터 공동체라디오모임으로 시작해서 지역 지상파라디오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통해 방송 - 전주공동체라디오 팟캐스트 '전주 온FM' 준비중 	
37	전북 전주	우리동네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시민미디어센터의 지원/협력으로 평화동마을신문과 연계해서 만드는 방송 - 현재 티브로드 전주방송을 통해 격주로 송출 중 	
38		당신을 만나는 라디오 카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팟캐스트 	
39		혁신 비빔 FM		
40		전주 온 F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시민미디어센터 라디오제작단 	
41		평화동 마을신문		
42		삼천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신문 	
43		송천동 마을신문		

44		학마을 사람들		
45		인후마을신문		
46		아중마을이야기		
47		효자동 징검다리 마을신문		
48		천사동 마을신문		
49	전북 완주	마을신문 완두콩	- 마을신문	
50		버머리 사람들		
51		소곤소곤 안덕		
52		시간을 잡는 소녀	- 잡지	
53		꿈꾸는 아세라디오	- 장애인사회복지시설 아름다운세상의 관내 라디오	
54	전북 김제	김제라디오	- 개인운영 팟캐스트	
55	전북 진안	진안방송	- 전주시민미디어센터가 2009년부터 시작한 진안 주민 대상 공동체라디오교육을 시작으로 마이라디오팟캐스트를 거쳐, 진안 방송 시작	
56		백운마을신문	- 백운면 주민자치위원회	
57	전북 남원	지리산 산내마을신문	- 산내마을신문모임	
		지글스	- 지리산에서 글 쓰는 여자들	
58	전북 익산	재미IN라디오	-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의 지원을 통해 제작되는 '익산시민이 만드는 재미IN라디오' -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편성	
59	전북 군산	3빠의 재미난 라디오	- 팟캐스트	
60	전북 고창	마을신문 해리	- 책마을 해리	
61	전북 무주	무주 반딧불 라디오	- 무주 반딧불 전통시장 스피커 방송	
62	강원 원주	홍양천 공동체라디오 '투알'	-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지원으로 개국한 원주 태장2동 공동체라디오방송국	

			- 태장2동 주민센터에 스튜디오를 구축하여, 흥양천 스피커 및 인터넷을 통해 청취	
63		원더풀 라디오	-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지원으로 제작되는 인터넷 라디오 - 원주영상미디어센터 라디오제작교육 수료자(주부/청소년/직장인)들이 만드는 라디오로 '원주 지역 공동체라디오 준비모임'의 성격	
64	강원 화천	화천N	- 화천생태영상센터 지원으로 화천주민들이 직접만드는 마을잡지 (화천군 최초의 지역 매체)	
65		화천I	- 화천생태영상센터 지원으로 지역민들이 만드는 영상매거진(월 1회 CJ헬로비전에서 방송)	
66	강원 춘천	산골마을 미디어주민대학	-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와 춘천문화재단에서 춘천시 고탄리의 마을미디어(신문/영상) 활성화를 위한 교육진행	
67		낭만시장FM	-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의 지원으로 춘천중앙시장상인들이 만드는 라디오 방송	
68		답낮은 마을방송		
69	강원 횡성	뽀뽀(fun,fun)한 우리동네 섬강라디오	- 횡성읍변영회에서 주관하여 강원도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을 통해 추진됨 - 셰이크스트를 통해 송출	
70	강원 양구	청춘FM	- 강원도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을 통해 추진 - 양구읍사무소 2층에 스튜디오 구축	
71	강원 인제	날아라 청개구리	- 춘천문화재단 지원(문화이모작사업)으로 인제군 서화면 지역어린이들이 만드는 마을방송(팟캐스트) - 13년 문화부장관상 수상	
72	강원 평창	평창올림픽시장 사랑방 라디오 방송국	- 평창올림픽시장 상인 라디오 방송국 - 방치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인테리어를 통해 라디오 방송국과 휴식공간으로 조성	
73		부천마을미디어 마을록	- 부천시 행복한 마을만들기 1단계 주민공모사업 '마을미디어 마을 록' 발행(인쇄매체)	
74	경기 부천	할수다	- 노인자치연구소 은빛날개에서 쫓이마을방송국과 연대하여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부천 약대동 실버방송	

75		약대곶이마을방송국	-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76		YG방송국	- 부천 역곡시장 상인 라디오방송국 - 시장 안내방송을 하던 부스를 개방형 스튜디오로 만들어 'YG방송국'이라 이름 붙였고, 현재 4명의 상인 DJ가 각자 요일을 맡아 방송을 진행 중	
77	경기 고양	행신티톡	- "우리 동네 소식을 우리 손으로" 덕양구 행신티톡 사람들의 이야기와 관심사를 다루는 마을매체	
78		고양e-TV 매거진	- 고양영상미디어센터의 지원으로 미디어누리영상제작단이 제작하는 방송 - 온라인 및 지역케이블에서 방송	
79	경기 성남	참TV	-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	
80		원다방	- 상대원시장라디오방송국	
81		JOY라디오	- 중원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	
82		한울신문	- 태평동 마을신문	
83		상상TV	- 정자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	
84		원더풀 성남	- 성남미디어센터 시민라디오제작단	
85		경기 수원	매탄신문/매탄청소년진로탐험대	- 영통구 매탄동
86	다다마을		- 영통구 광고/팔달구 인계동	
87	칠보산 마을 꿈꾸는 라디오		- 권선구 금호동	
88	수원맘의 아름다운 라디오		- 권선구 권선동/영통구 매탄동	
89	오! 소리! 낭독자		- 팔달구 인계동	
90	울긋불긋 풋대추		- 팔달구 화서2동	
91	참빛청소년쉼터		- 팔달구 인계동	
92	SK청솔노인복지관 -시네마청춘		- 장안구 정자동	
93	푸른언덕좋은사람들		- 권선구 오목천동	
94	오! 소리! 낭독자		- 영통구 이의동	
95	다울마을	- 팔달구 인계동		

96		꽃피버들마을	- 팔달구 화서2동	
97		보라씨	- 팔달구 화서동/행궁동	
98		이웃문화협동조합	- 팔달구 지동	
99	경기 구리	구리전통시장 보이는라디오	- 경기 구리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ICT(정보통신기술)기반의 '보이는 라디오' - 상인과 다문화가족, 시민들이 교육을 거쳐 현재 4기 총 19명이 DJ활동 중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송출	
100	경기 양평	양평 물맑은시장 라디오방송국	- 양평 물 맑은 시장 라디오방송국은 시장 공용주차장 내 로컬푸드 직매장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5일 장날에 장이 서는 공용주차장이 유리창 너머로 훤히 보이는 라디오방송국입니다. - 5일장이 서는 3, 8, 13, 18, 23, 28일이면 오전, 오후로 나누어 시장 상인들과 양평 주민들이 DJ로 방송을 진행하시고, 평일 화-목요일은 양평 중학교와 양일중학교 학생들이 라디오방송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101		학익마을방송	-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만들어진 인천남구 학익동의 마을방송 - 인천 남구청의 '공가 무상임대 협약을 통한 공가 활용사업'으로 공간 마련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마을방송이 세상을 바꾼다'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마을/공동체 방송을 지원하고 있음
102	인천 남구	선배시민방송	-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지원을 통해 제작되는 다양한 마을/공동체방송	
103		액티브시니어방송		
104		주안공동체방송		
105		어린이기자단		
106		다문화방송	-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지원을 통해 제작되는 이주민방송	
107	인천 강화	강화 풍물시장라디오	-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추진(강화군,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청이 공동 주최하고 강화풍물시장상인회에서 주관)	



세미나 공동주최 단체 현황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 고양영상미디어센터
- 김해영상미디어센터
- 대구영상미디어센터
- 부천시민미디어센터
- 성남미디어센터
- 서천군미디어문화센터
- 수원영상미디어센터
-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
- 원주영상미디어센터
-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 제천영상미디어센터
- 주안영상미디어센터
- 제주영상미디어센터
-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 전주시민미디어센터
- MBC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 대구MBC시청자미디어센터
- 목포MBC시청자미디어센터
- 울산MBC시청자미디어센터
- 전주MBC시청자미디어센터

옥천군영상미디어센터
충무로 영상센터 '오! 재미동'
화천생태영상센터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액트
진주시민미디어센터
강서구영상미디어센터
은평뉴타운 미디어라이브리센터
광주동구영상미디어센터
화성시미디어센터

▶▶▶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마포FM(서울 마포구)
관악FM(서울 관악구)
FM분당(경기 성남시)
금강FM(충남 공주시)
영주FM(경북 영주시)
성서FM(대구시 성서구)
광주FM(광주시 북구)

▶▶▶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강릉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강원도 강릉시)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경기도 의정부시)
고창군 식도락마을체험사업단(전라북도 고창군)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 서구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광주광역시 서구)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서울특별시 금천구)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대전광역시)
 도봉구마을지원센터(서울특별시 도봉구)
 광주광역시남구마을공동체협력센터(광주광역시 남구)
 무주군 마을만들기 사업소(전라북도 무주군)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서울특별시)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경기도 수원시)
 안산시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경기도 안산시)
 완주공동체지원센터(전라북도 완주군)
 은평마을지원센터(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천 남구 학산마을협력센터(인천광역시 남구)
 인천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인천광역시)
 전라북도마을만들기협력센터(전라북도)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전라북도 전주시)
 정읍시공동체활성화센터(전라북도 정읍시)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전라북도 진안군)
 화성시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경기도 화성시)
 종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마을 봄'(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제주특별자치도)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충남연구원)(충청남도)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경기도 고양시)
 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서울특별시 노원구)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경기도 시흥시)
 부평구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인천광역시 부평구)
 천안시공동체지원센터(충청남도 천안시)

▶▶▶ 디지털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

한국미디어교육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한국지역언론학회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미디어교육협동조합(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인권센터
깨끗한 미디어를 위한 교사운동
전국국어교사모임
우리말교육현장학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감독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한국아나운서협회
한국PD연합회

관악FM

노원FM

강북FM

창신동라디오 덤

도봉N

동작FM

ON동네방송국

금천 징검다리

금천IN

은평시민신문

용산FM

가재울라디오

MWTV

와보송

구로FM

성동FM

강서FM

성북FM

마을미디어뽀

마포FM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

라디오금천

매거진 충무로

한중방송

<p>성북(35)</p>	<p>우리동네 능말 성북마을문화학교 옆엔터테인먼트 와보송 꺼따꺼이 부라더스 돌빛 두가지이유(두유) 서울T/V시니어기자단 성북 나눔의 집 성북 실버IT센터 성북라디오 협동조합 성북신나 아사다모 영화광의 탄생, 파이트클럽 정릉세아빠(성북공동육아협동조합) 정릉신시장사업단 친구네옥상 퓨전난타 소리 해피온TV (사)실종아동찾기협회 sb미디어 주빌리 코리아 사회참여극단 돌쌓기 공간 민들레 노네임필름 성북동천 삼태기마을 주민공동체운영회 거실혁명(은하수살롱) 황지선(개인)</p>
---------------	---

	실버 빛사모 커피임팩트 분데스 매니아 GMN(Global Media Network) 스마트 티비뉴스 보키니 영화본색
도봉(3)	마을미디어 도봉N 은행나루마을방송국 마을콘텐츠제작단 엠블
노원(4)	노원FM NY CAST 마들주민회 부설 마들창조학교 노원뉴스 나우온
강북(1)	강북구 공동체라디오

문화연대

문화연대는 문화사회를 향해 함께 떠나는 즐거운 여행입니다!

문화연대가 꿈꾸는 문화사회는 ‘억압이 아닌 자유’, ‘차별이 아닌 평등’, ‘경쟁이 아닌 평화’가 존중되는 사회입니다. 개인적, 사회적 상상력과 표현이 어떠한 권력으로부터도 제약되거나 침해되지 않는 자율적이고 호혜적인 문화사회. 그 곳으로 떠나는 여행은 그 자체가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즐거운 반란이자 유쾌한 사건입니다.

문화연대는 언제나 문화권리와 문화민주주의의 확대를 기획하고 실천합니다!

문화권리와 문화민주주의는 문화사회를 향한 여행에 있어 반드시 챙겨야 할 두 바퀴의 마차입니다. 문화권리는 우리의 일상을 둘러싼 권리이며, 삶의 질 그 자체

입니다. 문화권리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이윤과 개발을 위해 침해되거나 양보될 수 없습니다. 문화연대는 문화를 둘러싼 사회적 공공성과 다양성이 확대되어 시민과 민중의 일상적 삶의 권리가 보장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문화연대는 형식화된 민주주의, 기념화된 민주화를 넘어 민주주의의 감수성이 살아있는 문화민주주의를 고민하고 실천합니다.

문화연대는 불온한 상상력과 진보적 감수성의 놀이터입니다!

문화사회를 향한 문화연대의 무모한 도전이 계속될 수 있는 것은, 문화권리 앞에서 예민하고 당당한 당신이 매혹적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연대는 당신의 불온한 상상력과 진보적 감수성을 지지합니다.

언론연대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경기미디어시민연대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바른지역언론연대
방송기자연합회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새언론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언론인권센터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신문판매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언론을위한모임
학술단체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기독교협의회(정의평화위원회 사회정의소위원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청년연합
환경운동연합